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 공보관
 731-6111~3

서울시보

| | |
|--------|------------------|
| 선 람 | 기 관 의 장 |
| | |

제 1996 호 1996. 9. 20.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입 법 예 고
 공고 제 1996-346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증개정조례(안)입법예고 4
- 예 규
 제 624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등에관한규정 4
- 공 고
 제 1996-347호 소방설비공사업면허행정처분 32
 제 1996-348호 의료보호진료기관지정및지정취소 33
 제 1996-349호 도시계획사업(수도)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한공람 33
 제 1996-350호 도시계획사업(동작구사당동147-121~사당동144~18간도로)실시계획
 인가를위한공람 35
 제 1996-356호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 35
- 구 고 시
 제 1996-39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기간연기)(종로) 36
 제 1996-38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중구) 36

〈이면계속〉

| | | | | | | | | | | | | |
|---|--|--|--|--|--|--|--|--|--|--|--|--|
| 공 | | | | | | | | | | | | |
| 람 | | | | | | | | | | | | |

제 1996- 60호 옥수제9주택개량재개발구역내수용할토지, 건축물및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성동) 37

제 1996- 65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주차장)실시계획변경인가(동대문) 38

제 1996- 66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동대문) 39

제 1996- 67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변경인가(동대문) 40

제 1996- 68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동대문) 41

제 1996- 83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성북) 42

제 1996- 84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성북) 42

제 1996- 48호 도시계획사업(월계근린공원내스포츠센터)시행자변경인가(도봉) 42

제 1996- 49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인가(도봉) 44

제 1996- 63호 도시계획사업(마포어린이공원)실시계획인가(마포) 46

제 1996- 39호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및지적승인(양천) 47

제 1996- 43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강서) 47

제 1996- 63호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실시계획변경인가(구로) 47

제 1996- 64호 도시계획시설(시장)실시계획인가지정기일변경(구로) 48

제 1996- 70호 도시계획시설(신일어린이공원)조성계획결정및지적승인(영등포) 49

제 1996- 71호 도시계획시설(고추말어린이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지적승인(영등포) 50

제 1996- 23호 도시계획사업(도로확장)실시계획변경인가(송파) 54

● 구 공 고

제 1996- 201호 신조공인(종로) 58

제 1996- 236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동대문) 58

제 1996- 125호 신정제6-2지구주택개량재개발공사완료(양천) 58

제 1996- 167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등록정치처분(금천) 59

제 1996- 196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관악) 59

제 1996- 258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강남) 65

제 1996- 200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송파) 65

제 1996- 201호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람(송파) ... 65

● 사업소고시

제 1996- 91호 하천점용허가(한강관리사업소) 66

● 입찰공고

제 1996- 20호 공사입찰(북부교육청) 67

- 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 1996- 3호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의재산등록사항과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재산변동사항 68
- 공 문 시 행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보도담당관, 가양하수처리사업소) 69
- 인 사 발 령 69
- 기 타 72
 정 정 개 재

입 법 예 고

●서울특별시공고제1996-346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 9. 20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우리시 도시공원조례 중 공원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근린 및 체육공원에 있어서 시와 자치구간의 현행 공원조성 면적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상당수의 자치구는 재정상태가 취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보상비가 많이 드는 공원조성사업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근린 및 체육공원의 경우 현행 공원조성면적 기준 10만m²를 3만m²로 하향조정하여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공원조성의 활성화를 기함(안 제 26조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공원과장, 전화 778~0681, FAX 778~068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예 규

서울특별시립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등에 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6. 9. 20

서울특별시장 조 순 ㉠

●서울특별시예규제624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등에
관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서울특별시가 건립하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가칭,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개관준비에 필요한 유물의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유물"이라 함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재로서 관리전환된 매장문화재나 발굴조사·채집·구입·기증·기탁·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에 수입되는 모든 유물을 말한다.

2. "수집"이라 함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또는 관리전환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3. “출납”이라 함은 유물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제사항을 말한다.
- 4. “수장고”라 함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 5. “대여”라 함은 유물을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빌려 오거나 공공기관에 빌려 주어 일반공중의 관람에 제공하게 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 6. “열람”이라 함은 유물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 7. “복제”라 함은 유물의 촬영, 탁본, 모사 및 모조를 하거나 영상, 음향, 사진 자료 등을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 8. “유물반출·입”이라 함은 구입, 기증, 기탁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유물이 일시로 들고 나는 제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문화시설운영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2장 유물의 수집

제4조(수집대상) ①수집대상의 범위는 학문적·예술적·가치가 있는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로서 박물관 개관 준비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②수집은 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하되, 박물관 전시유물의 확충을 위해 소장은 타 박물관 또는 기관 소장유물을 대여받아 전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유물구입) ①구입대상 유물은 1차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물수집실무위원회에서 조사·선정하고 2차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물평가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후 3차로 조례에서 정한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이하 “개관준비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서울특별시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②경매유물 구입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무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관계 전문가의 심의 평가를 받아 이를 소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6조(구입업무처리) ①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관보, 시보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1.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구입대상 유물 분야 선정
- 2. 구입공고
- 3. 매도희망 유물의 접수여부 등 결정
- 4.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
- 5. 개관준비위원회 기획유물분과위원회의 최종심의
- 6.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③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개인, 법인 또는 단체, 문화재매매업자 등)는 제1항의 공고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매도대상 유물을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유물매도 신청서 1통
- 2. 매도대상 유물 또는 관련자료
- 3. 주민등록증 사본 1통
- 4. 유물매도 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매도위임을 받은 자에 한함)
- 5.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증 사본 1부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1.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 2. 문화재보호법 제82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 3. 공고 대상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⑤소장은 접수유물의 수량이 일시보관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접수될 때는 접수의 연기 또는 지정한 장소에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

⑥구입결정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해 평가된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가격은 그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⑦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 내에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며 본인은 그 유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유물수집실무위원회) 소장은 유물수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박물관운영관(이하 "운영관"이라 한다), 소속직원 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원으로 구성하고 개관준비위원회 위원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관이 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개최) ①실무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개최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는 위원장

이 이를 결정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임무) ①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임무로 한다.

- 1. 구입대상 유물의 조사 및 범위선정
- 2.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 3. 기타 유물수집에 관하여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간사는 회의개최시 회의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유물평가위원회) 소장은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 평가하기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제1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평가위원회는 수집대상유물의 분야별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전체위원 수는 20인 내외로 한다.

②위원은 개관준비위원회 위원 또는 시문화재위원 및 사계 권위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소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은 조례를 준용하며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실무위원회 간사가 겸임한다.

제13조(평가위원회의 임무) ①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평가한다.

- 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및 가격평가
- 2. 수집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 3. 기타 유물수집에 관하여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물평가서를 작성하여 개관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평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평가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분야별로 개최하되 개최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회의의 의결은 수집대상 분야별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한다.

제15조(개관준비위원회의 개최) ①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평가된 수집대상유물은 개관준비위원회 기획유물분과위원회에서 수집여부를 최종 심의 의결한다.

②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조사비 및 수당 등) 각종 위원회 개최시 소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와 관련한 여행 출장비, 원고료 및 회의 참석 수당, 심의 평가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유물기증) ①소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유물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유물기증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기증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평가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④기증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사패 등을 증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유물평가 금액의 2할을 초과할 수 없다.

⑤기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제18조(유물기탁) ①유물을 기탁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유물기탁원을 제출해야 하며 기탁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기탁원을 갱신해야 한다.

②기탁의 결정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유물을 수탁할 경우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④수탁기간은 특별히 협정한 경우 외에는 5년으로 하며 기탁자가 기탁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기탁유물반환수령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⑤수탁기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기탁자가 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보관료 및 부대경비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기탁유물은 박물관에 기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기탁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기탁품은 박물관 유물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제19조(유물 반·출입) 유물의 반입시 반입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유물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출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유물반출허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유물확인 및 일시보관) 반입된 유물은 유물출납공무원이 확인하며, 유물 구입 기증 또는 심의 평가 등의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박물관에 보관될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유물보관의뢰서 및 유물보관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유물 반·출입 감독자) 유물의 반출·입시에 소장은 반출·입자를 지정하여 유물 반·출입에 관한 제 사항을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수집업무 처리) 소장은 수집결정된 유물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거 구입, 기증, 수탁하거나 관리전환 등의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3조(유물수집보고) 소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유물수집 계획 및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유물의 관리

제1절 유물의 출납

제24조(유물관리기관) ①소장은 박물관 유

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소장은 유물관리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운영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유물출납공무원) ①소장은 유물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유물출납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유물출납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소장유물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소장유물 증감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소장유물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유물의 복제, 열람 및 대여에 관한 사항

제26조(유물대장) 유물출납공무원은 효율적인 유물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유물대장을 작성 보관해야 한다.

제27조(유물수입) 신규로 수입한 유물을 대장에 등재할 때에는 작성자를 명기해야 한다.

제28조(유물출납) ①유물출납은 유물출납공무원 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의 책임 하에 행한다.

②유물출납공무원 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유물출납대장을 비치하고 보관유물의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유물출납공무원 등의 재정보증) 유물출납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은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유물의 인수·인계) 유물출납공무원의 변경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유물을 인수·인계할 때는 유물대장에 인수

인계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수장고관리

제31조(유물수장고) ①소장은 박물관 유물의 안전 관리를 위한 금고실 및 유물을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유물은 수장고에만 보관할 수 있다.

②수리·복원 및 조사·연구 중에 있는 유물은 안전방호 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32조(유물의 관리 등) ①유물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유물카드를 작성·유지·관리해야 한다.

②소장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물 전산관리용으로 별도의 유물카드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③소장유물의 망실·도난·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유물의 망실·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물보험을 설정할 수 있다.

⑤제3항의 망실·도난·훼손 등이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명백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소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이에 대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⑥사업수행의 필요에 의해 타 기관에서 대여, 이관 및 관리전환 등에 의해 박물관에 수입되는 유물은 박물관 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이 경우 보험의 설정 및 특수 보관 시설 설치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제33조(유물의 수리·복원) ①소장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때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수리

또는 복원을 요하는 부분 및 그 담당자를 명시하고 시방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소에서 수리 및 복원이 불가능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제18조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유물의 소독 및 특별관리) ①소장 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②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일반 유물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유물의 이동시에는 안전운송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전란 및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소장은 박물관 내의 다른 물품보다 우선해서 소장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5조(수장고 출입제한) ①직원이 직무상으로 수장고를 출입코자 할 때는 반드시 유물출납공무원 또는 동 공무원이 지명하는 자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다.

②수장고 출입은 유물출납공무원이라도 단독 출입을 금하며 2인 이상 동행하여야 한다.

③정상근무시간 외에 수장고를 출입코자 할 때는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장고 출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
2. 직연,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의 행위
3. 기타 질서문란 행위

제36조(수장고 열쇠관리) ①수장고 열쇠는 두 벌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유물출납공무원 및 소장이 연대 봉인하여 소장이 이를 보관한다. 다른 한 벌은 유물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유물출납시 사용한다.

②수장고 출입을 위한 열쇠의 관리를 위해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장고열쇠출납부를 비치·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수장고 관리 일지) 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관리일지를 비치·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유물출납공무원 부재시 유물의 출납) 유물출납공무원 부재시 유물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소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 또는 소장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출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물출납 공무원에게 그 사유와 출납 사항을 관리대장 등에 사후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3절 유물의 대여

제39조(대여의 대상기관) 소장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장 유물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국·공립,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국·공립과학관 및 등록 과학관
3.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에 설치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
4.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물 등의 전시관

제40조(대여업무처리) ①제39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유물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대여를 허가한 경우 소장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유물대여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대여의 조건) 소장은 박물관 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2조(대여료) 대여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43조(변상책임) ①박물관 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 소장은 평가위원회 심의 평가 결정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박물관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준수사항) 박물관 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소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절 유물의 열람

제45조(열람일시) 열람일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6조(열람허가) ①박물관 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유물열람허가 신청서를 열람 5일 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장이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유물열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7조(열람대상자) 열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요원으로서 문화·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2. 대학교의 박사과정 중에 있는 자
3. 기타 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48조(유물열람자 준수사항) 유물열람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자는 유물에 대해 일체 직접적인 접촉을 가할 수 없음.
2. 유물 열람장소 이외는 일체 열람할 수 없음.
3. 기타 소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49조(손해배상) 열람자는 열람 유물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절 유물의 복제

제50조(유물복제신청) ①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개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복제자”라 한다)는 복제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9호 서식의 유물복제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서로 복제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도기관이 보도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복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복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51조(복제허가) ①소장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물복제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동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경우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경우
3. 문화,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경우
4. 기타 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소장이 복제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유물복제 허가서를 신청인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복제자는 그 복제품 하단에 허가사항 및 박물관 유물임을 표시해야 한다.

제52조(허가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3조(준수사항) 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복제할 것
- 2. 유물의 훼손, 도난, 망실을 방지할 것
- 3. 유물의 훼손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
- 4. 기타 소장이 정하는 사항

제54조(허가취소 등) 소장은 복제자가 복제 중 제53조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 등으로 복제를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복제를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5조(복제의 연기) 소장은 복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제를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복제를 연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 접수번호 :

| | | | | |
|-------|--------------|--|---------------------|--|
| 매도신청자 | 주 소 | | 연락처 | |
| 인적사항 | 성 명 (상 호)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매도신청 유물목록

| 연 번 | 유 물 명 칭 | 시 대 | 크 기 | 소장연유 | 요 구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본인소유 유물을 매도코자 합니다.

- 단 1. 상기 유물은 장물(도굴품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도굴품 등)로 판명될 시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 2. 상기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에 대하여는 귀 사업소에서 정한 기일내에 회수하겠습니다.

19

매도신청자 (인)

서울특별시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귀하

이면 사진 부착

| | | | | | | |
|--|-------------------|--------|------|--|-----|-----------|
| <별지 제2호> <u>유 물 평 가 서</u> | | | | | | |
| (평가제 호) | | | | | | |
| 대 상 | 명 칭 | | 종 류 | | 수 량 | |
| | 규 격 | | 재 질 | | | |
| 유 물 | 소유자(발견자) 주소·성명 | | 소장연유 | | | |
| 평 가 사 항 | 시 대 | 사 진 | | | | |
| | 작 자 | | | | | |
| | 형태 및 보존상태 | | | | | |
| | 수 집 가 치 | | | | | 유 · 무 |
| | 평 가 금 액 | | | | | 원 (₩) |
| 기 타 | | | | | | |
| 위와 같이 심의 평가함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립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 | | | | | |

〈별지 제3호〉

유 물 기 증 원

※ 기증번호 :

| | | | | |
|-------|--------------|--|---------------------|--|
| 유물기증자 | 주 소 | | 연락처 | |
| 인적사항 | 성 명 (상 호)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기증할 유물목록

| 유 물 명 | 시 대 | 수 량 | 규 격 | 소 장 연 유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위와 같이 본인이 소유한 유물을 아무 조건없이 귀 시립박물관 전시 및 연구자료로 기증하고자 이에 유물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유물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반환요구 등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19

유물기증자 성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제 호

유 물 기 증 증 서

○ ○ ○

년 월 일생

귀하가 우리시에 기증하신 별첨목록의 문화재 자료를 시립박물관 전시 및 연구자
료로 보존 및 진열 활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별지 제5호>

유 물 기 탁 원

※ 접수번호 :

| | | | | | |
|------|-----|--|--------|-----|--|
| 기탁자 | 주 소 | | | 연락처 | |
|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기탁할 유물목록

| 연 번 | 유 물 명 칭 | 시 대 | 수 량 | 규 격 | 기탁기간 | 비 고 |
|-----|---------|-----|-----|-----|------|-----|
| | | | | | | |

위와 같이 본인이 소유한 유물을 서울특별시립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으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19

유물기탁자 성명 (인)

서울특별시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6호>

수 탁 증 서

※ 발급번호 :

| | | | | |
|------|-----|--|--------|--|
| 기탁자 | 주 소 | | 연락처 | |
|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기탁한 유물목록

| 유 물 명 칭 | 시 대 | 수 량 | 규 격 | 수 탁 기 간 | 비 고 |
|---------|-----|-----|-----|---------|-----|
| | | | | | |

위와 같은 유물을 서울특별시립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으로 수탁보관하고 수탁증서를 교부합니다.

<별지 제7호>

기탁 유물 반환 수령증

제 호

| | | | | | |
|------|----|--|--------|-----|--|
| 수령자 | 주소 | | | 연락처 | |
|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기탁유물 반환품 유물목록

| 유물명칭 | 시대 | 수량 | 규격 | 수탁기간 | 비고 |
|------|----|----|----|------|----|
| | | | | | |

상기 본인은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립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으로 기탁한 바 있는 유물을 기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상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9

수령자 성명 (인)

서울특별시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별지 제8호>

유 물 반 입 신 고 서

제 호

| | | | | |
|------------|-----------|--|-----|--|
| 신고자 | 직 위 (직 급) | | 성 명 | |
| 반 입 유 물 | 유 물 명 | | 번 호 | |
| | 반입목적 | | 수 량 | |
| | 대상부서 | | | |

상기 유물의 반입을 신고함

19

반입신고자 : (인)

반입확인자 : (인)

서울특별시립박물관(본임) 유물출납공무원 귀하

<별지 제9호>

유 물 반 출 허 가 서

제 호

| | | | | | |
|-------|--|--------|--|-----|--|
| 신 청 인 | | 직위(직급) | | 성 명 | |
| 반출일시 | | 반출품명 | | 번 호 | |
| 반출목적 | | | | | |
| 비 고 | | | | | |

위 유물의 반출을 허가함

19

반 출 자: (인)

반출확인자: (인)

서울특별시립박물관(분임) 유물출납 공무원

<별지 제10호>

유 물 보 관 의 퇴 서

제 호

| | | | | | |
|---------|-----|-----|-----|--------|--|
| 보관의퇴자 | 주 소 | | | 전화번호 |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품 명 | 시 대 | 수 량 | 특 징 | | |
| | | | | | |
| 보관의퇴 기간 | | | | | |
| 보관의퇴 사유 | | | | | |

상기 유물을 서울특별시립 박물관에 보관의퇴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퇴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19

서울특별시립 박물관(분임) 유물출납공무원 귀하

유 물 보 관 중

제 호

| | | | | | |
|---------|-----|-----|-----|--------|--|
| 보관의퇴자 | 주 소 | | | 전화번호 |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품 명 | 시 대 | 수 량 | 특 징 | | |
| | | | | | |
| 보관예정 기간 | | | | | |
| 보관의퇴 사유 | | | | | |

상기 유물을 서울특별시립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19

서울특별시립 박물관(분임) 유물출납공무원

※ 본 보관중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별지 제11호〉

유 물 대 장

| 유물번호 | 유물명 | 시대 | 수량 | 수 장 연 유 | 분류 | 수장위치 | 크기 | 구조 | 비고 | 확인 |
|------|-----|----|----|------------------------------|----|------|----|----|----|----|
| | | | | 수장 년 월 일 보상가액 원 구입가액 원 | | | | | | |
| | | | | 수장 년 월 일 보상가액 원 구입가액 원 | | | | | | |
| | | | | 수장 년 월 일 보상가액 원 구입가액 원 | | | | | | |
| | | | | 수장 년 월 일 보상가액 원 구입가액 원 | | | | | | |
| | | | | 수장 년 월 일 보상가액 원 구입가액 원 | | | | | | |
| | | | | 수장 년 월 일 보상가액 원 구입가액 원 | | | | | | |

<별지 제12호>

유 물 출 납 대 장

| 년 월일 | 적요 | 수 입 | | | | 불 출 | | | | 현재 총계 | 비고 | 확인 |
|---------|----|-----|------------|----|---|-----|----|----|---|----------|----|----|
| | | 소장품 | 기탁 (이관) | 대여 | 계 | 이관 | 대여 | 기타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 * <u>유 물 카 드</u> | | | | | | | | | |
| 유물번호 | | | | | | | 수집일자 | | |
| | | | | | | | 수집구분 | | |
| 유물명칭 | | | | 시 대 | | | | 종 류 | |
| 출 처 | | | | | | | 재 질 | | |
| 수집내역 | | | | | | | | | |
| 크 기 | 가로 | | 길이 | | 두께 | | 무게 | | |
| | 세로 | | 높이 | | 지름 | | 면수 | | |
| 구조 및 특징 | | | | | | | | | |
| 비 고 | 사진번호 | | | | | | | | |
| | 보존처리 | | | | | | | | |
| | 작성 자 | (년 월 일) | | | | | | | |
| (이면) | | | | | | | | | |
| 일자 | 수 장 처 | | | 확인 | 일자 | 수 장 처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 | | | | 진 | | | | |

<별지 제14호>

수 장 고 열 의 출 납 부

| 년월일 | 수장실명 | 사 용 내 역 | 반 출 신청자 | 반 출 시간 | 허 가 결 재 | | | 반 납 자 인 | 반 납 확자 인 | 비 고 |
|-----|------|------------|------------|-----------|---------|------------|------------|------------|----------------|-----|
| | | | | | 담당 | 유 출 공무원 | 물 납 소 장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

유 물 대 여 신 청 서

| | | | | |
|--|------|-------|-----|-----|
| 처리기간 | 4 일 | | | |
| 허가여부 | | 제 호 | | |
| 대상유물 | 명 칭 | | 종 류 | |
| | 유물번호 | | 수 량 | |
| 대여목적 | | | | |
| 대여기간 | | 보관장소 | | |
| 보관시설 현 황 | | | | |
| 보호관리 방 법 | | | | |
| 운반방법 | | 운 반 자 | 직 위 | |
| 보상방법 | | | | |
| 비 고 | | | | |
| <p>1. 상기 유물의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여 신청자 소속 기관명</p> <p style="text-align: center;">근무부서 : (전화)</p>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등록번호 :</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귀하</p> | | | | |
| 구비서류 | | | | 수수료 |

<별지 제16호>

유 물 대 여 허 가 서

제 호

| | | | | | | |
|-------------------|-----|--|----|------|------|--|
| 대 여 신 청 기 관 | 기관명 | | | 신청부서 | | |
| | 신청인 | | 관계 | | 전화번호 | |

대 여 허 가 내 역

| 유 물 번 호 | 유 물 명 칭 | 유 물 수 량 | 열 람 수 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여 기 간 | | | | |
| 대 여 목 적 | | | | |
| 대 여 내 역 | | | | |
| 운 반 방 법 | | | | |
| 부 대 조 건 | | | | |

19 귀하의 시립박물관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위와같이 대여
를 허가합니다.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 | | | | | |
|---|------|------|--------|-----|--|
| <별지 제17호> <u>유물 열람 허가 신청서</u> | | | | | |
| 처리기간 | 4 일 | | | | |
| ※허가여부 | 제 호 | | | | |
| 신청인 | 주소 | | | 전화 |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유물번호 | 유물명칭 | 유물수량 | 열람수량 | 비 고 | |
| | | | | | |
| 열람일시 | | | 열람인원 | | |
| 열람목적 | | | | | |
| 열람내역 | | | | | |
| 열람장비 | | | | | |
| 기타참고사항 | | | | | |
| 1.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립박물관 소장유물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유물을 열람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지시 사항을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19 년 월 일</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신청인 (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서울특별시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귀하 </div> | |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 |

<별지 제18호>

유 물 열 램 허 가 서

제 호

| | | | | |
|-----|-----|--|--------|--|
| 신청인 | 주 소 | | 전 화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열 램 허 가 내 역

| 유 물 번 호 | 유 물 명 칭 | 유 물 수 량 | 열 램 수 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열 램 일 자 | | 열 램 시 간 | | 열 램 인 원 | |
| 열 램 목 적 | | | | | |
| 열 램 내 역 | | | | | |
| 열 램 장 비 | | | | | |
| 부 대 조 건 | | | | | |

19 귀하의 서울특별시립박물관 유물 열람허가 신청사항에 관하여 위와같이 열람을 허가합니다.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별지 제19호>

유물복제허가신청서

| | | | | |
|--------|------|------|--------|----|
| 처리기간 | 4 일 | | | |
| ※허가여부 | | 제 호 | | |
| 신청인 | 주소 | | | 전화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유물번호 | 유물명칭 | 유물수량 | 복제수량 | 비고 |
| | | | | |
| 복제일시 | | | 복제인원 | |
| 복제목적 | | | | |
| 복제내역 | | | | |
| 복제장비 | | | | |
| 기타참고사항 | | | | |

1. 서울특별시립박물관 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복제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별지 제20호>

유물복제허가서

제 호

| | | | | |
|-----|----|--|--------|--|
| 신청인 | 주소 | | 전화 |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복제허가내역

| 유물번호 | 유물명칭 | 유물수량 | 복제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제일자 | | 복제시간 | | 복제인원 | |
| 복제목적 | | | | | |
| 복제내역 | | | | | |
| 복제장비 | | | | | |
| 복제조건 | | | | | |

19 귀하의 신청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유물복제허가신청 사항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복제를 허가합니다.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정이유

97년 준공 및 2,000년 개관을 목표로 경희궁지내에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시립박물관에 전시·보존할 유물의 원활한 확보와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 수집된 귀중한 유물을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규정(예규)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 문화시설운영사업소로 정함(제3조).

나. 수집대상 유물의 범위를 학문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로서 박물관 개관준비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로 정함(제4조).

다. 유물수집의 방법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관리전환 등으로 함(제4조).

라. 유물구입시는 관보, 시보 또는 일간지에 공고하되 자체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3단계 심의·평가 과정을 거쳐 구입 여부를 결정함(제5조~제6조).

마. 유물수집시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할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제15조).

바. 유물의 기증·기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7조~제18조).

사. 유물의 출·납 및 일시 반·출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9조~제22조).

아. 유물관리기관, 출납기관, 수장고 관리사항을 정함(제24조~제38조).

자. 유물의 다른 기관에의 대여, 열람, 복제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9조~제55조).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1996-347호

소방설비공사면허행정처분공고

소방법 제58조제1호·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면허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996. 9. 20

서울특별시장

| 상 호 (영업소재지) | 대표자 | 처분면허 (번호) | 행정 처분 종류·일자 | 행정처분 사 유 | 적 용 법 규 |
|-------------------------------------|-------------|---|--------------------------------|--------------------------|---|
| 우룡건설(주) (서초구 서초동 1463-10) | 김중수 | 공사업 제2종 (전기분야) (제94-100호) (94. 7. 8) | · 면허취소 · 처분일자: 96. 9. 14 | 면허의 기준 중 시설 및 장비미달 | 소방법 제58조제1호· 제6호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97조(별표 16 제2호마목(1)) |
| (주)삼우기술단 (서초구 서초동 1631-90) | 김문형 외 3인 | 공사업제1·2종 (기계·전기) (제94-164호) (94. 7. 8) | · 면허취소 · 처분일자: 96. 9. 14 | 면허의 기준 중 기술능력 미달 | 소방법 제58조제1호 : 제6호 및 같은법시 행규칙 제97조 [별표 16제2호마목(1)] |

| 상 호 (영업소재지) | 대표자 | 처분면허 (번호) | 행정 처분 종류 : 일자 | 행정처분 사 유 | 적 용 법 규 |
|----------------------------------|-----|---|--------------------------------|------------------------|---|
| (주)구상전설 (서초구 서초동 810-9) | 황성훈 | 공사업 제2종 (전기분야) (제92-70호) (92. 5. 15) | • 면허취소 • 처분일자: 96. 9. 14 | 면허의 기준 중 기술능력 미달 | 소방법 제58조제1호· 제6호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97조(별표 16 제2호마목(1)) |

●서울특별시공고제 1996-348호
의료보호진료기관지정및지정
취소공고

의료보호법 제10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진료지구의 의료보호진료기관을 다음과 같

이 지정 및 지정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6. 9. 20

서울특별시장

1. 제2차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3개소)

| 지정 번호 | 진료기관명 | 소 재 지 | 개설자 (대표자) | 진료과목 | 주민등록 번호 | 전화 번호 | 지정일 |
|----------|--------|--------------------|--------------|---------------|--------------------|--------------|-----------|
| 2-275 | 세광병원 | 구로구 공동 198-8 | 임봉문 | 정형외과 외 3개과 | 471129- 1240717 | 615- 2233 | 96. 9. 20 |
| 2-276 | 삼우병원 | 동대문구 회기동 67-1 | 김 식 | 내과 외 3개과 | 531022- 1010311 | 968- 2121 | 96. 9. 20 |
| 2-277 | 한국성심병원 | 동대문구 답십리 463-19 | 안승준 | 내과 외 7개과 | 460915- 1055315 | 242- 0114 | 96. 9. 20 |

2. 제2차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취소(2개소)

| 지정번호 | 진료기관명 | 소 재 지 | 개설자(대표자) | 취소사유 | 취소지정일 |
|-------|--------|------------------|----------|-------|-----------|
| 2-130 | 구세병원 | 동대문구 답십리동 463-19 | 조 철 구 | 폐 업 | 96. 9. 20 |
| 2-259 | 한국성심병원 | 동대문구 답십리동 463-19 | 류 근 하 | 개설자변경 | 96. 9. 20 |

●서울특별시공고제 1996-349호
도시계획사업(수도)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중랑구고시 제1996-39호(96.
7. 25)로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조압수조건설공사(강북정

수장계통)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수도) 실
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의2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의2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공고합
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3907-384) 및 중랑구청 도시정비과(490-3385~7)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시는 의견서를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 9. 20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위치 : 중랑구 신내동 산 1-13 일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수도)

다. 사업의 명칭 : 조압수조건설(강북정수장계통)

라. 사업규모 및 면적 : 조압수조(배수지용량 2,038톤), 면적(당초 4,547㎡, 변경 5,075㎡)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인가일 ~1998.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별첨

아.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자.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공부상면적 (㎡) | 편입면적 (㎡) | 소 유 자 | | 비 고 |
|----|---------|--------|----|-----------|----------|----------------|----------------|----------|
| | | | | | | 성 명 | 주 소 | |
| 계 | | 14필지 | | | 5,075.0 | | | |
| 1 | 중랑구 신내동 | 산 1-13 | 임 | 1,953 | 1,953.0 | 서울특별시 | | |
| 2 | " | 산 1-14 | 임 | 304 | 304.0 | 서울특별시 | | 산 1-7 분할 |
| 2 | " | 산 1-15 | 임 | 113 | 113.0 | 서울특별시 | | 산 1-7 분할 |
| 2 | " | 산 1-16 | 임 | 654 | 654.0 | 동래정씨 승지공파 양원종중 | 중랑구 망우동 산 24-1 | 산 1-3 분할 |
| 4 | " | 4-4 | 도 | 17 | 17.0 | 서울특별시 | | 4-3 분할 |
| 5 | " | 8-5 | 철 | 44 | 44.0 | 철 도 청 | | 8-4 분할 |
| 6 | " | 9-6 | 전 | 158 | 158.0 | 서울특별시 | | 9-5 분할 |
| 7 | " | 10-1 | 철 | 175 | 175.0 | 철 도 청 | | |
| 8 | " | 10-4 | 전 | 34 | 34.0 | 서울특별시 | | |
| 9 | " | 10-5 | 전 | 1,171 | 1,171.0 | 서울특별시 | | |
| 10 | " | 11-3 | 전 | 180 | 180.0 | 서울특별시 | | |
| 11 | " | 11-7 | 전 | 15 | 15.0 | 서울특별시 | | |
| 12 | " | 16-1 | 철 | 119 | 119.0 | 철 도 청 | | 16 분할 |
| 13 | " | 37-5 | 도 | 138 | 138.0 | 서울특별시 | | 37-3 분할 |

●서울특별시공고제 1996-350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
위한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0호(96. 7. 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동작구 고시 제1996-38호(96. 9. 4)로 지적승인된 동작구 사당동 147-121~사당동 144-18간 도로 확장 계획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6. 9. 20

서울특별시

1. 인가신청 요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47-121~사당동 144-18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2) 명칭 : 동작구 사당동 147-121~사당동 144-18간 도로확장공사

다.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라. 사업개요 : 도로확장 공사(B=25m→40m, L=140m)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부 98. 12. 31까지

2.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건설3부(775-8318), 동작구 건설관리과(813-3969) · 도시정비과(820-1385)

4. 수용할 토지, 건물, 영업권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항

●서울특별시공고제 1996-356호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공고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하고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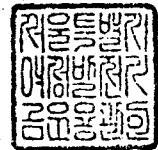
1996. 9. 20

서울특별시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
관 서 명 서울특별시 가정복지국
직 명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관
사용개시일 1996년 9월 일

인 영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
관 서 명 서울특별시 가정복지국
직 명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 출납원
사용개시일 1996년 9월 일

인 영



구 고 시

●종로구고시제 1996-39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기간연기)고시

1. 건설부고시 제177호(62. 12. 8)로 도시
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종로구고
시 제1994-27호(94. 9. 15)로 실시계획

나. 사업의 개요

인가된 바 있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
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였기
에 동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6. 9. 20

종 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변
경 인가

| 사업시행지 | 사업의 명칭 | 사업의 규모 | 사업시행자 | 비 고 |
|------------------------|--------------------|--|----------------|-----|
| 필운동 142-6~ 필운동 90-5 | 필운동~옥인동간 도로개설공사 | 도로개설 B=15m L=1,140m 중 200m (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

다. 변경내용(사업시행 기간 연기)

- ┌ 당초 : 인가일로부터 96. 9. 14
- └ 변경 : 인가일로부터 97. 12. 31

라. 변경사유 : 사업시행지내 토지 미확보
로 인한 사업기간 연기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
세 : 변경 없음.

●중구고시제 1996-38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중구공고 제1996-54호(96.
3. 29)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가. 사업개요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한 바 있는 신당
동 311-14~326-10간 주변에 대한 도시
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5조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
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3. 관계도서는 중구 토목과(260-1405~7),
건설관리과(260-1400~3)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9. 20

중 구 청 장

| 사업시행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규모 | 비 고 |
|---------------------------|--|---|-----|
| 중구 신당동 311-14 ~326-10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사업(도로) • 신당동 311-14~326-10간 도로확장 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4→8m • 연장 250m | |

-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다. 사업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인가일로부터 2년까지
-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 마.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성동구고시제1996-60호

옥수제9주택개량재개발구역내수용할토지, 건축물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고시

- 1. 건설부고시 제1993-55호(93. 3. 5)로 구역지정되고 같은 고시 제1995-66호(95. 3. 10)로 추가구역 지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5호(94. 1. 7)로 사업계획 결정되고 같은 고시 제1996-16호(96. 2. 7)로 사업계획변경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성동구고시 제1994-77호(94. 10. 31)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및 같은 고시 제1996-32호(96. 6. 13)로 조합설립변경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된 옥수제9구역 주택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중 현재까지 재개발사업시행에 동의하지 않고 동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 지장물철거에 응하지 않는 사유토지 8필지와 건축물 1개동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1조 및 도시계획법 제29조, 제30조 규정에 의거 수용절차를 이행하고자 수용할 토지, 건축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를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 수용할 토지, 건축물 및 소유권 이외의 명세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과, 옥수2동사무소, 옥수제9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9. 20

성 동 구 청 장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옥수제9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258 일대(273필지 50.195㎡)

다. 주된 사무소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262-13

라. 사업내용 : 아파트 8~20층 11동 1,4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6개월

바. 시행자의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262-13 옥수제9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정진찬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구 분 | 토 지 건 축 물 | | | | | | | | | | | | | | 비고 |
|--------|--------------|--------|--------|----------|----------|------------------|-----------|---------------------|-----|----|-----|--------|----|-----------|----|
| | 토 | | 지 | | | | 건축물 | | | | 소유자 | | 비고 | | |
| | 동명 지번 | 지 목 | 면적 | 편입 면적 | 이용 상황 | 용도지 역또는 지구 | 소유자 성명 | 주소 | 소재지 | 종류 | 수량 | 면적 | | 소유자 성명 | |
| 계 | | | 673.67 | | | | | | | | 1 | 347.02 | | | |
| 1 | 옥수동 228-2 | 전 | 40.0 | 40.0 | 택지 | 재개발 | 손희자 | 성북구 삼선동 1가217 | | | | | | | |

| 구 분 | 토 지 | | | | | | 건 축 물 | | | | | | 비고 | | |
|--------|----------|--------|----|----------|----------|-------------------|-------|----------------------|--------------|-----------|--------|--------|-----|-------|-------------------|
| | 동명 지번 | 지 목 | 면적 | 편입 면적 | 이용 상황 | 용도지 역또는 지 구 | 소유자 | | 소재지 | 종류 | 수 량 | 면적 | | 소유자 | |
| | | | | | | | 성명 | 주소 | | | | | | 성명 | 주소 |
| 수 | 2 | 232-5 | 대지 | 163.0 | 163.0 | 택지 재개발 | 조영애 | 옥수동 232-5 | 옥수동 232-5 | 다가구 주택 | 1 | 347.02 | 조영애 | 232-5 | 분양할 수없는 주택임 |
| | 3 | 232-6 | 전 | 50.0 | 50.0 | 택지 재개발 | 정승희 | 광진구 자양동 64-1 | | | | | | | |
| | 4 | 232-8 | 전 | 20.0 | 20.0 | 택지 재개발 | 정후산 | 옥수동 380 | | | | | | | |
| 용 | 5 | 232-13 | 도로 | 58.0 | 58.0 | 택지 재개발 | 박재성 | 옥수동 232-13 | | | | | | | |
| | 6 | 241-1 | 대지 | 69.0 | 69.0 | 택지 재개발 | 백승일 | 옥수동 428 | | | | | | | |
| | 7 | 241-2 | 대지 | 238.0 | 238.0 | 택지 재개발 | 백주흠 | 옥수동 극동④ 8-1310 | | | | | | | |
| | 8 | 244-12 | 대지 | 35.67 | 35.67 | 택지 재개발 | 김한식 | 금호4가 103-3 | | | | | | | |

● 동대문구고시제 1996-65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주차장) 실시
계획변경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95-10호(95. 14)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주차장) 실시계획 인가한 바 있는 성북천변 노상주차장 건설 및 진입도로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주차장)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9. 20

동대문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7-3~92-60(변동없음)

나. 사업의 종류·명칭: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주차장)(변동없음), 성북천변 노상주차장 건설 및 진입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폭 6m, 연장 290m(변동없음), 주차장면적 2,666.4㎡

라.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변동없음)

마. 사업착공 및 준공연월일: 1995. 2. 14 ~ 1996. 12. 31(변경전), 1995. 2. 14 ~ 1997. 2. 28(변경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변경인가고시 내역

(영업권손실 보상물건조서)

| 연번 | 소재지 | 건물주 | 업소명 | 업종 | 대표자 | 비고 |
|----|----------|-----|------|-----|-----|----|
| 1 | 신설동 97-3 | 이정중 | 광주스텐 | 비금속 | 김해숙 | |

● 동대문구고시제 1996-66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1994-9호 (94. 3. 26)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인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1동 92-67간 외 1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토목과(920-4405) 및 건설관리과(920-4400~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9. 20

동대문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1동 92-67간 외 1개소

나. 사업의 종류·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용두1동 92-67간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폭 8m, 연장 127m(용두1동 82-27~용두1동 82-1)
- 폭 8m, 연장 54m(용두1동 24-1~용두1동 24-2)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변경전 : 인가일~96. 12. 31
- 변경후 : 인가일~97.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변경인가고시 내역

(사업명 : 용두1동 92~67간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 소재지번 | | 물건 | 구조 | 면적(㎡) | | 소유자 주소 | | 소유자 성명 | | 비고 |
|----------|----------|-----------|---------------|---------------|----|----------|----------|--------|-----|----|
| 당초 | 변경 | |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
| 용두동 89-2 | 용두동 47-2 | 주택 화장실 | 목조 슬레이트/블록 | 26.3㎡ 3.1㎡ | - | 용두동 89-2 | 용두동 47-2 | 최영학 | 채을순 | |

| 소재지번 | | 물건 | 구조 | 면적(m ²) | | 소유자 주소 | | 소유자 성명 | | 비고 |
|-------------|----|----|----|---------------------|--------------------|-------------|----|--------|-----|----|
| 당초 | 변경 | |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
| 용두동 89-2 | - | 주택 | 목조 | 93m ² | 25.7m ² | 용두동 89-2 | - | 김명규 | - | |
| | | | | | 48.1 | | | 김혜진 | 오태현 | |
| | | | | | 19.2 | | | 김명규 | - | |

● 동대문구고시제 1996-67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1994-45호 (95. 11. 21)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인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5-137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토목과(920-4405~8) 및 건설관리과(920-440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9. 20

동대문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5-585 ~ 137-609간
나. 사업의 종류·명칭: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제기동 135-137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 B=8m, L=48m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마. 사업착공 및 준공 연월일: 인가일 ~ 1996년 12월 31일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사. 사용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변경내역

제기동 135-137간 도로개설 공사
(변경전)

| 연번 | 지번 | 지목 |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 | 관계인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소유권외 권리명세 |
| 1 | 제기동 137-579 | 주택 | 1m ² | 1m ² | 손이남 | | | | |

| (변경후) | | | | | | | | | |
|-------|----------------|-----|-----|----------|-------|-----|-------|-----|--------------|
| 연번 | 지 번 | 지 목 |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소유권외 권리명세 |
| 1 | 제기동 137-579 | 주 택 | 18㎡ | 18㎡ | 손이남 | | | | |

●동대문구고시제1996-68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1994-14호 (96. 3. 8)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인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445-34~445-40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토목과(920-4405) 및 건설관리과(920-4400~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9. 20

- 동 대 문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445-34~445-40간
 - 나. 사업의 종류·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청량리동 445-34~445-40간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B=8m, L=100m
 -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장
 - 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인가일로부터 2년간
 - 바.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 사. 사용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변경내역

청량리동, 445~444-1간 도로개설공사
(변경전)

| 연번 | 지 번 | 물 건 | 규격 및 종류 | 수량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 |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소유권외 권리명세 |
| 1 | 청량리동 416 | 주 택 | 슬레이트/블록 | 37.8 | 이인용 | 청량리동 416 | | | |

| (변경후) | | | | | | | | | |
|-------|-------------|-----|---------|-----------|-------|-------------|-------|-----|--------------|
| 연번 | 지 번 | 물 건 | 규격 및 종류 | 수량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소유권의 권리명세 |
| 1 | 청량리동 416 | 주 택 | 슬레이트/블록 | 37.8 | 송태국 | 청량리동 416 | | | |

●성북구고시제1996-83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민영(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6. 9. 20

성 북 구 청 장

1. 사업명 : 민영(임대)주택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명 : 이환구
 - 주소 : 성북구 안암동5가 128 외 1필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규모
 - 가. 위치 : 성북구 안암동5가 128 외 1필지
 - 나. 면 적
 - 대지면적 : 1,021.23㎡
 - 건축면적 : 573.54㎡
 - 연면적 : 2,744.26㎡
 - 다. 규모 : 연립주택 1개동 지하 1층, 지상 4층 44세대
4. 사업시행기간 : 1996. 9~1997. 8

●성북구고시제1996-84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666호(78. 12. 2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1996-16호(96. 3. 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1996-64호(96. 7. 9)로 인가한 “종로구제~성북동길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와 제2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와 제2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토목과(920-3405~8)와 건설관리과(920-3400~2)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9. 20

성 북 구 청 장

가. 변경내용 : 소유자 및 편입면적 정정
나. 기타사항 변경 없음.

따로붙임 : 변경토지 및 물건조서 1부

●도봉구고시제1996-48호

도시계획사업(월계근린공원내스포츠센터)시행자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28호(93. 2. 1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되고 도봉구고시 제1993-12호(93. 2. 25)로 지적승인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69호(96. 4. 4)로 변경결정고시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1996-17호(96. 4. 15)로 지적승인 후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1996-36호(96. 6. 25)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시행자 지정된 도봉구 창동 산 157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27조 및 동

법시행령 제17조제1호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가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6. 9. 20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 157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시행

○명칭 : 월계근린공원조성(스포츠센터)

다. 사업의 내용

○면적 : 17,851㎡ 중 부지면적 : 7,780
㎡, 시설면적 : 6,238㎡

○사업규모 : 스포츠센터 1동(지하 1층
~지상 3층) 및 산책로 조성

지하 1층 : 볼링장, 휴게실, 창고,
기계실

지상 1층 : 수영장, 수영장 부대시
설

지상 2층 : 일반음식점, 종합체육관

지상 3층 : 체력단련장, 관리사무실
등

시 설 조 서

| 구분 | 시설명 | 부 호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면 적(㎡) | | 비 고 |
|----------|------------|--------|-------------|-------------|-------------|-----|----|----------|----------|------------|
|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계 | | | | 7,780 | 5,140 | | | 1,788.87 | 4,987.48 | |
| 운동 시설 | 소 계 | | | 7,780 | 5,140 | | 1동 | 1,788.87 | 4,987.48 | |
| | 스포츠 센 터 | 5 | 창동 산 157 | 7,780 | 5,140 | R.C | 1동 | 1,788.87 | 4,987.48 | 지하1 지상3 |

도서조서(산책로)

| 구분 | 등급 | 유별 | 번호 | 폭원 (m) | 연장 (m) | 면 적 (㎡) | 기 능 | 기 점 | 종 점 |
|----|-----|----|----|-----------|-----------|------------|-----|----------|--------|
| 계 | | | | | 915 | 1,098 | | | |
| 신설 | 산책로 | 4 | 22 | 1.2 | 510 | 612 | 산책로 | 창동 산 157 | 중 2-78 |
| " | " | 4 | 23 | 1.2 | 36 | 43 | " | 창동 산 157 | 산 4-22 |
| " | " | 4 | 24 | 1.2 | 369 | 443 | " | 창동 산 157 | 산 159 |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96. 6 인가일로부터~97. 12. 31

마. 시행자 주소, 성명

○변경전

주소 : 마산시 합포구 산호동 160-27
태림종합건설주식회사

성명 : 강득훈

○변경후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29
-26

성명 : 광진홍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 | | | |
|-------------------|-----|-----------|---------------------|-------|-------------------|
| 소재지 | 지목 | 지적 (㎡) | 사용또는 수용면적 (㎡) | 소 유 자 | |
| | | | | 성명 | 주소 |
| 계 | 1필지 | 17,851 | 17,851 | | |
| 도봉구 창동 산 157 | 임야 | 17,851 | 17,851 | 곽진홍 |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29-26 |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생략

●도봉구고시제1996-49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도봉구공고 제1996-192호(96. 8. 10)로 공람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실시계

획의 인가)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실시계획인가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건설관리과와 토목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보입니다.

1996. 9. 20

도봉구청장

가. 사업개요

| 순번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규모 | 시설결정고시 | 지적고시 |
|----|----------------|--|-----------------|------------------------------|------------------------------|
| 1 | 도봉동 30-2~40-3간 |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도봉동 한신아파트~도봉산역간 도로개설공사 | B= 8m L=160m | 서도고 95-38호 (95. 9. 11) | 서도고 95-38호 (95. 9. 11) |

나.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다.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996. 9 ~ 1997. 12. 31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별첨(생략)

마.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생략)

| 토 지 조 서 | | | | | | |
|------------------------------|--------------|----|-----------|-----------------|----------------|---|
| 사업명 : 도봉동 한신아파트~도봉산역간 도로개설공사 | | | | | | |
| 번호 | 소재지 지 번 | 지목 | 지적 (㎡) | 편입 면적 (㎡) | 소 유 권 | |
| | | | | | 성 명 | 주 소 |
| 1 | 도봉동 40-13 | 철 | 234 | 234 | 철 도 청 | 중구 봉래동2가 122 |
| 2 | 40-15 | 전 | 320 | 320 | 박 봉 규 | 강북구 우이동 181-7 |
| 3 | 40-16 | 철 | 67 | 67 | 철 도 청 | 중구 봉래동2가 122 |
| 4 | 37-14 | 구 | 7 | 7 | 도 봉 구 | 도봉구 창5동 320 |
| 5 | 37-15 | 구 | 11 | 11 | 도 봉 구 | 도봉구 창5동 320 |
| 6 | 41-3 | 전 | 22 | 22 | 박 봉 규 | 강북구 우이동 181-7 |
| 7 | 42-4 | 답 | 13 | 13 | 김 윤 수 | 도봉동 349 |
| 8 | 43-3 | 잡 | 198 | 198 | 도봉동지역 주택조합 | 도봉동 613-37 |
| 9 | 44-14 | 전 | 7 | 7 | 김 병 수 홍 상 학 | 성북구 길음동 496-8 방학동 681-24 (마광영 송파 문정 150 웨밀리 [Ⓐ] 225-102) (이진기 영등포 여의도동 21-2 공작 [Ⓐ] 다-810) (최윤정 송파 신천 20-2 진주 [Ⓐ] 16-402) (조경화 은평 녹번동 29-106 102호) (윤정옥 종로 동숭동 2-6) |
| 10 | 도봉동 44-13 | 전 | 45 | 45 | 정 경 근 김 진 성 | 도봉동 349 도봉동 211 |
| 11 | 44-15 | 전 | 89 | 89 | 김 병 수 홍 상 학 | 성북구 길음동 496-8 방학동 681-24 (마광영 송파 문정 150 웨밀리 [Ⓐ] 225-102) (이진기 영등포 여의도동 21-2 공작 [Ⓐ] 다-810) (최윤정 송파 신천 20-2 진주 [Ⓐ] 16-402) (조경화 은평 녹번동 29-106 102호) (윤정옥 종로 동숭동 2-6) |
| 12 | 44-17 | 도 | 45 | 45 | 도 봉 구 | 도봉구 창5동 320 |
| 13 | 44-16 | 철 | 180 | 180 | 철 도 청 | 중구 봉래동2가 122 |
| 14 | 44-18 | 철 | 9 | 9 | 철 도 청 | 중구 봉래동2가 122 |
| 15 | 42-1 | 답 | 1 | 1 | 김 윤 수 | 도봉동 349 |

| 물 건 조 서 | | | | | | |
|------------------------------|--------------|--------|---------|-----------|----------------|-----------------------------|
| 사업명 : 도봉동 한신아파트~도봉산역간 도로개설공사 | | | | | | |
| 번호 | 소재지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 | 소 유 권 | |
| | | | | | 성 명 | 주 소 |
| 1 | 도봉동 44-15 | 수목 | | 1식 | 박 봉 규 | 강북구 우이동 181-7 |
| 2 | 44-13 | 수목 | | 1식 | 철 도 청 | 중구 봉래동2가 122 |
| 3 | 44-14 | 수목 | | 1식 | 김 병 수 홍 상 학 | 성북구 길음동 496-8 방학동 681-24 |
| 4 | 43-3 | 수목 | | 1식 | 도봉동지역 주택조합 | 도봉동 613-37 |
| 5 | 42 | 비닐하우스 | 철재/비닐 | 1동 | 박 종 수 | 도봉동 42 |

●마포구고시제1996-63호
도시계획사업(마포어린이공원)
실시계획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1966-189호 (96. 8. 7)로 도시계획사업(마포어린이공원) 실시계획 공람공고가 완료되어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6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마포어린이공원)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공원녹지과와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9. 20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마포어린이공원)
나. 사업개요

| 사업명 | 사업시행지 | 사업의종류 및 규모 | 도시계획사항 | 사업기간 | 비고 |
|-------------|----------------------|---|--|--------------------|----|
| 마포어린이공원조성공사 | 마포구 마포동 350-5 외 16필지 | 계 2,030㎡ 기반시설 : 941.4㎡ 조경시설 : 101.2㎡ 유희시설 : 166.1㎡ 녹 지 : 821.3㎡ | - 건설교통부고시 제 882호(85. 12. 24) 시설결정 - 서울시고시 제1996-147호(96. 6. 8) 조성계획결정 | 인가일로 부터 97. 12. 31 | |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마포구 성산동 275-3)

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조서

마. 위치도 및 지적현황 도면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및 도시정비과 비치

바.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 따로붙임조서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공원녹지과(330-2395~9), 도시정비과(330-2385~7)

●양천구고시제1996-39호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8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에 의해 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양천구청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650-3385) 및 지적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9. 20

양 천 구 청 장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 구 분 | 시 설 명 | 위 치 | 면적(m ²) | 비 고 |
|-----|--------|-----------------------|---------------------|-----|
| 신 설 | 공용의 청사 | 양천구 신정동 1051-11 외 3필지 | 1,046.9 | |

●강서구고시제1996-43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고시

우리 구에 소재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의2에 위배되었기에 등록말소 처분 후 동법시행령 제10조

의3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6. 9. 20

강 서 구 청 장

| 연번 | 등록번호 | 상 호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내역 | 처분사유 | 등록말소일 |
|----|---------|---------|-----|---------------|------|--------|----------|
| 1 | 92-16-2 | (주)신성주택 | 손두호 | 강서 염창동 282-26 | 등록말소 | 등록기준미달 | 96. 9. 9 |
| 2 | 94-16-2 | (주)애드랜드 | 허영남 | 강서 등촌동 648 | 등록말소 | 등록기준미달 | 96. 9. 9 |

●구로구고시제1996-63호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

실시계획변경인가

본 시설은 건설부고시 제73호(87. 3. 9)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하고, 서울시고시 제206호(87. 3. 30)로 유통업무설비 지적승인 되고, 서울시고시 제945호(88. 12. 5)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된 다

음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0호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 실시 계획 변경인가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996. 9. 20

구 로 구 청 장

| | |
|--|---|
| <p>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35-8 일대</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 설비), 서울중앙기계부품상가 신축</p> <p>다. 사업시행규모 : "마"항 금회 변경내용 참조</p> | <p>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25-1, 서울중앙기계부품상 협동조합 이사장 김대환</p> <p>마. 금회변경내용 : 별첨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실시계획 변경현황</p> <p>바. 기타사항 : 변경없음.</p> |
|--|---|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실시계획 변경현황

| 시설명 | 위치 | 세부시설명 (㎡) | | | 비고 | |
|------------|----------------------|-----------|-----------|------------|------------|----------|
| |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 |
| 서울중앙기계부품상가 | 구로구 구로동 635-8 와 65필지 | 건축면적 | 34,194.42 | 34,194.42 | | |
| | | 건물연면적 | 계 | 308,702.89 | 308,702.89 | |
| | | | 판매시설 | 92,520.18 | 92,520.18 | |
| | | | 사무실 | 37,647.35 | 37,647.35 | |
| | | | 편익시설 | 17,026.88 | 17,026.88 | |
| | | | 주차장 | 142,937.88 | 142,937.88 | |
| | | | 기계 및 전기실 | 3,968.45 | 3,968.45 | |
| | | | 창고 및 조작장 | 14,602.15 | 14,602.15 | |
| | | 조경면적 | 계 | 13,271.61 | 12,993.61 | 감 278.00 |
| | | | 지상 | 10,919.61 | 10,641.61 | 감 278.00 |
| 옥상 | 2,352.00 | | 2,352.00 | | | |

●구로구고시제1996-64호
도시계획사업(시장)실시계획
인가지정기일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65호(72. 5. 25)와 구로구고시 제1996-24호(96. 3. 4)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시설변경(면적)결정 지적승인되고, 구로구고시 제1996-33호(96. 5. 10)로 사업시행자 지정된 구로구 가리봉동

126-1 일대 시장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5조 ③항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지정기일 변경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996. 9. 20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구로구 가리봉동 126-1 외 38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사업(시장)
- 명칭 : 가리봉시장 재건축사업

다. 사업규모

- 대지 면적 : 6,605.90㎡
- 건축연면적 : 44,050.19㎡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26-38

○성명

가리봉시장 주택 재건축조합 조합장 김영국
가리봉시장 재건축조합(가칭) 대표 김영국, 주식회사 기산마트

마. 실시계획인가 신청기일

- 변경전 : 시행자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 변경후 : 시행자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영등포구고시제1996-70호

도시계획사업(신일어린이공원)조성
계획결정지적승인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38호(96. 8. 2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신일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고, 같은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 9. 20

영등포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55-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신일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다. 사업규모 : 붙임조서 참조(도면생략)

라. 사업시행자 : 영등포구청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도시계획시설(신일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1) 시설 총괄표

- 위치 : 영등포구 신길동 455-1

| 구 분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 축 물 | | | 공작물 (기) | 비 고 |
|-------|----------|----------|-------|---------|--------|---------|-----|
| | | | 동수(동)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계 | 173.6 | 103.2 | | | | 11 | |
| 휴양시설 | | | | | | 4 | |
| 유희시설 | 103.2 | 103.2 | | | | 1 | |
| 관리시설 | | | | | | 6 | |
| 녹지·기타 | 70.4 | | | | | | |

| (2) 시설조서 | | | | | | | | | |
|----------|--------|-----|-----------|-------------|-------------|---------|-----|------------|--------------|
| 구분 | 시설명 | 부호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축물 (㎡) | | 공작물 (기) | 비 고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계 | | | | 173.6 | 103.2 | | | 11 | 시설률 59.4% |
| 휴양 | 소 계 | | | | | | | 4 | |
| 시설 | 평의자 | ① | 신길동 455-1 | | | | | 4 | |
| 유희 시설 | 소 계 | | | 103.2 | 103.2 | | | 1 | |
| | 놀이터 | 가 | 신길동 455-1 | 103.2 | 103.2 | | | | |
| | 조합놀이대 | ②-1 | 신길동 455-1 | | | | | 1 | |
| 관리 시설 | 소 계 | | | | | | | 6 | |
| | 수목보호덮개 | ③-1 | 신길동 455-1 | | | | | 5 | |
| | 울타리 | ③-2 | 신길동 455-1 | | | | | 1 | |
| 녹지 | 소 계 | | | 70.4 | | | | | |
| | 녹 지 | | 신길동 455-1 | 70.4 | | | | | |

●영등포구고시제1996-71호

도시계획사업(고추말어린이공원)조성
계획변경결정지적승인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39호(96. 8. 27)로 공원 조성계획 결정된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고추말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고, 같은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 9. 20

영 등 포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3-1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고추말어린이공원) 조성계획<변경>
- 다. 사업규모 : 붙임조서 참조(도면생략)
- 라. 사업시행자 : 영등포구청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도시계획사업(고추말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1) 시설총괄표

위 치 : 영등포구 도림동 23-1 일대

| 구분 | 시설명 | 변 경 전 | | | | | | 변 경 후 | | | | | | 비 고 |
|------------------|-----|-------------|-------------|------------|-------------|------------|------------|-------------|-------------|------------|-------------|------------|------------|----------|
| |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 축 물 | | | 공작물 (기)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 축 물 | | | 공작물 (기) | |
| | | | | 동 수 (동) | 바닥면적 (㎡) | 연면적 (㎡) | | | | 동 수 (동) | 바닥면적 (㎡) | 연면적 (㎡) | | |
| 계 | | 3,071 | 360 | | | | 103 | 3,071 | 1,816 | | | | 83 | |
| 기 반 시 설 | 소 계 | | | | | | | 859 | 859 | | | | | 증 859㎡ |
| | 도 로 | | | | | | | | | | | | | |
| | 광 장 | | | | | | | 859 | 859 | | | | | |
| 조 경 시 설 | | 198 | 134 | | | | 6 | 110 | 110 | | | | 5 | 감 88㎡ |
| 휴 양 시 설 | | 34 | 34 | | | | 48 | | | | | | 32 | 감 34㎡ |
| 운 동 시 설 | | 22 | 22 | | | | 5 | 234 | 234 | | | | 8 | 증 214㎡ |
| 유 희 시 설 | | 250 | 169 | | | | 8 | 613 | 613 | | | | 16 | 증 363㎡ |
| 편 익 시 설 | | 2 | 1 | | | | 1 | | | | | | | 감 2㎡ |
| 관 리 시 설 | | | | | | | 35 | | | | | | 22 | |
| 녹 지 및 기타 | | 2,565 | | | | | | 1,255 | | | | | | 감 1,310㎡ |

72-51

| (2) 시설조서 | | | | | | | | | | | | | | |
|----------|----------------------------|--------|---------|-------------|-------------|----|------------|--------|--------------|-------------|-------------|----|------------|---------------|
| 구분 | 시설명 | 변 경 전 | | | | | | 변 경 후 | | | | | | 비 고 |
| | | 부 호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공작물 (기) | 부 호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공작물 (기) | |
| 합 | 계 | | | 3,071 | 360 | | 103 | | | 3,071 | 1,816 | | 82 | 시설물 59.13<60% |
| 기반 시설 | 소 계 | | | | | | | | | 859 | 859 | | | |
| | 광 장 | | | | | | | 가 | 도림동 23-123-8 | 859 | 859 | | | |
| 주경 시설 | 소 계 | | | 198 | 134 | | 6 | | | 110 | 110 | | 5 | |
| | 파 고 라 | ① | 도림동23-2 | 198 | 134 | 목재 | 6 | ① | 도림동 23-1 | 32 | 32 | 목재 | 1 | |
| | 육각파고라 | | | | | | | ② | 도림동 23-1 | 38 | 38 | 목재 | 2 | |
| | 셸 터 | | | | | | | ③ | 도림동 23-1 | 40 | 40 | 목재 | 2 | |
| 휴양 시설 | 소 계 | | | 34 | 34 | | 48 | | | | | | 32 | |
| | 평 의 자 | ② | 전 지 역 | 34 | 34 | 목재 | 48 | ④ | 전 지 역 | | | 목재 | 18 | |
| | 등 의 자 | | | | | | | ⑤ | 전 지 역 | | | 목재 | 14 | |
| 운동 시설 | 소 계 | | | 22 | 22 | | 5 | | | 234 | 234 | | 7 | |
| | 운 동 장 | | | | | | | 나 | 도림동 23-1 | 234 | 234 | | | |
| | 철 봉 | ⑧ | | | | 철재 | 2 | ⑥ | 도림동 23-1 | | | 철재 | 1 | |
| | 균 형 대 | ⑨ | | | | 목재 | 2 | ⑦ | 도림동 23-1 | | | 목재 | 1 | |
| | 씨 름 장 | ⑩ | | 22 | 22 | 조적 | 1 | | | | | | | |
| | 배 근 력 대 | | | | | | | ⑧ | 도림동 23-1 | | | 목재 | 1 | |
| | 링 잡 고 오 르 기 | | | | | | | ⑨ | 도림동 23-1 | | | 철재 | 1 | |

72-52

| 구분 | 시설명 | 변 경 전 | | | | | 변 경 후 | | | | | 비 고 | | |
|---------|--------|-------|----------|----------|----------|-------|---------|----------|----------|----------|----------|-------|----|---------|
| | | 부 호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공작물 (기) | 부 호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 구조 | 공작물 (기) |
| 운동 시설 | 몸통균형잡기 | | | | | | ⑩ | 도림동 23-1 | | | | 철재 | 1 | |
| | 평행봉 | | | | | | ⑪ | 도림동 23-1 | | | | 철재 | 1 | |
| | 팔굽혀펴기 | | | | | | ⑫ | 도림동 23-1 | | | | 목재 | 1 | |
| 유희 시설 | 소 계 | | | 250 | 169 | | 8 | | 613 | 613 | | | 16 | |
| | 놀이터 | | | | | | 다 | 도림동 23-1 | 613 | 613 | | | | |
| | 조합놀이대 | ③ | 도림동 23-4 | 196 | 131 | 목재 | 2 | ⑬ | 도림동 23-1 | | | 목재 | 2 | |
| | 정글짐 | ④ | 도림동 23-7 | 36 | 24 | 목재 | 2 | ⑭ | 도림동 23-1 | | | 목재 | 2 | |
| | 시소 | ⑤ | 도림동 23-2 | 12 | 8 | 철재 | 2 | ⑮ | 도림동 23-1 | | | 철재 | 1 | |
| | 레더 | ⑥ | 도림동 23-6 | 6 | 6 | 목재 | 1 | | | | | | | |
| | 점프대 | | | | | | | ⑯ | 도림동 23-1 | | | | 목재 | 10 |
| 편익 시설 | 소 계 | | | 2 | 1 | | 1 | | | | | | | |
| | 음수대 | ⑦ | 도림동 23-7 | 2 | 1 | | | | | | | | | |
| 관리 시설 | 소 계 | | | | | | 35 | | | | | | 22 | |
| | 공원등 | ⑪ | 전 지역 | | | 주철 | 10 | ⑰ | 전 지역 | | | 주철 | 10 | |
| | 블라드 | ⑫ | 전 지역 | | | 석재 | 10 | ⑱ | 전 지역 | | | 석재 | 4 | |
| | 휴지통 | ⑬ | 전 지역 | | | 스테인리스 | 15 | ⑲ | 전 지역 | | | 스테인리스 | 8 | |
| 녹지 및 기타 | 소 계 | | | 2,565 | | | | | 1,255 | | | | | |
| | 녹지 | | 전 지역 | 2,565 | | | | 전 지역 | 1,255 | | | | | |

72-53

● 송파구 고시 제 1996-23호

도시계획사업(도로확장)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 1995-31호(95. 11. 6)로 도시계획사업(도로확장) 실시계획인가고시한 송파구 장지동 약진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 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토목과 및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 9. 20

송 파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변경있음)

┌ 당초 : 송파구 장지동 564-3~586-2

└ 변경 : 송파구 장지동 600-29!586-10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약진로 확장공사(변경없음)

다. 사업규모(변경있음)

┌ 당초 : 폭 20→30m, 연장 320

└ 변경 : 폭 20→30~60m, 연장 610m

라. 사업시행자 : 송파구청장(변경없음)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변경있음)

┌ 당초 : 인가일~1996. 12. 31

└ 변경 : 인가일~1997.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조서 : 별첨(변경있음)

○ 변경전

토 지 조 서 목 록

(소재지 : 장지동)

| 연번 | 지 번 | 지목 | 면적(m ²) | 수용면적(m ²) | 소 유 자 | | 비 고 |
|----|--------|----|---------------------|-----------------------|------------|---------------------------------------|--------|
| | | | | | 성 명 | 주 소 | |
| 1 | 564-3 | 답 | 1,142 | 22 | 윤용중 | 서대문구 북가좌동 80-9 | 564-4 |
| 2 | 565-1 | 답 | 817 | 4 | 정중수 | 송파구 송파동 132-2 | 565-9 |
| 3 | 565-6 | 답 | 1,009 | 50 | 박종학 | 송파구 문정동 77-13 | 565-10 |
| 4 | 565-8 | 답 | 2,030 | 142 | 정중수 | 송파구 송파동 132-2 | 565-11 |
| 5 | 566-1 | 답 | 2,480 | 147 | 한상희 | 강동구 길동 341-24 | 566-21 |
| 6 | 566-8 | 답 | 670 | 10 | 유해문 |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 17-203 | 566-23 |
| 7 | 566-9 | 구 | 2,302 | 92 | (서울농지개발조합) | 강서구 목동 264-3 | 566-26 |
| 8 | 566-14 | 답 | 1,916 | 148 | 강완식 | 강남구 세곡동 170-42 | 566-22 |
| 9 | 566-16 | 답 | 528 | 74 | 유해문 |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 17-203 | 566-24 |
| 10 | 566-18 | 답 | 576 | 149 | 강완식 | 강남구 세곡동 170-42 | 566-25 |

| 연번 | 지 번 | 지목 | 면적(m ²) | 수용면적 (m ²) | 소 유 자 | | 비 고 |
|----|--------|----|---------------------|---------------------------|-------------------------|---|--------|
| | | | | | 성 명 | 주 소 | |
| 11 | 566-20 | 답 | 446 | 90 | 한상희 | 강동구 길동 341-24 | 566-27 |
| 12 | 567-3 | 답 | 806 | 40 | 유해문 |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 17-203 | 567-6 |
| 13 | 567-5 | 답 | 785 | 116 | 유해문 |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 17-203 | 567-7 |
| 14 | 568-2 | 답 | 415 | 77 | 한상희 | 강동구 길동 341-24 | 568-11 |
| 15 | 568-3 | 구 | 1,117 | 88 | (서울농지개발조합) 강서구 목동 264-3 | | 568-12 |
| 16 | 568-4 | 답 | 447 | 70 | 정영석 | 충북 진천군 문백면 계산리 산1 | 568-13 |
| 17 | 568-6 | 답 | 60 | 45 | 한상희 | 강동구 길동 341-24 | 568-15 |
| 18 | 568-10 | 답 | 144 | 68 | 정영석 | 충북 진천군 문백면 계산리 산1 | 568-14 |
| 19 | 576 | 답 | 1,786 | 313 | 박시경 | 광진구 능동 27-1 | 576-3 |
| 20 | 576-2 | 답 | 447 | 151 | 박시경 | 광진구 능동 27-1 | 576-4 |
| 21 | 577 | 답 | 984 | 302 | 원만길 외 1인 | 종로구 평창동 72 북악 맨션 4-205 박명옥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동 147-22 가처분(488/984) | 577-3 |
| 22 | 577-2 | 답 | 345 | 168 | 조장백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202-1 | 577-4 |
| 23 | 578 | 답 | 1,386 | 86 | 김봉기 | 송파구 문정동 77-5 송파농협 송파구 마천동 115-4(근저당 권 설정) | 578-2 |
| 24 | 586-1 | 답 | 5,609 | 188 | 조규태 | 경기 성남시 창곡동 202-1 | 586-13 |
| 25 | 586-2 | 답 | 5,009 | 360 | 손동구 | 경기 광주군 도천면 궁평리 산58 | 586-18 |
| 26 | 586-9 | 답 | 725 | 16 | 손동구 |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 53- 401 | 586-15 |
| 27 | 586-12 | 답 | 289 | 275 | 서울시 | | 586-14 |
| 28 | 587 | 답 | 1,508 | 156 | 조장백 | 경기 성남시 창곡동 202 | 587-3 |
| 29 | 587-2 | 답 | 7 | 7 | 김랑정 |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동 147-22 현대자동차 종로구 계동 140-2(근저당 권 설정) | 566-15 |

○ 변경후

토 지 조 서 목 록

(소재지: 송파구 장지동)

| 연번 | 지 번 | 지목 | 면적(m ²) | 수용면적 (m ²) | 소 유 자 | | 비 고 |
|----|--------|----|---------------------|---------------------------|-------------|-------------------------------|--------|
| | | | | | 성 명 | 주 소 | |
| 1 | 561-59 | 답 | 170 | 16 | 최상열 | 강남구 삼성동 92-3 리젠시타운 B단지 2-303 | 561-70 |
| 2 | 564-1 | 답 | 470 | 1 | 윤용중 | 서대문구 북가좌동 80-9 | 564-4 |
| 3 | 564-3 | 답 | 1,142 | 168 | 윤용중 | 서대문구 북가좌동 80-9 | 564-5 |
| 4 | 565-6 | 답 | 1009 | 239 | 박종학 | 송파구 문정동 77-13 | 565-9 |
| 5 | 565-8 | 답 | 2,030 | 566 | 정종수 | 송파구 송파동 132-2 | 565-10 |
| 6 | 566-4 | 답 | 2,089 | 1 | 이부영 | 종로구 가회동 36 | 566-23 |
| 7 | 566-9 | 구 | 2,302 | 97 | (서울농지개발조합) | 강서구 목동 264-3 | 566-24 |
| 8 | 566-16 | 답 | 528 | 193 | 유해문 |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 ① 17-203 | 566-25 |
| 9 | 566-18 | 답 | 576 | 274 | 강완식 | 강남구 세곡동 170-42 | 566-26 |
| 10 | 567-5 | 답 | 785 | 295 | 유해문 |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 ① 17-203 | 567-6 |
| 11 | 568-3 | 구 | 1,117 | 13 | (양북동농지개발조합) | 강서구 목동 264-3 | 568-13 |
| 12 | 568-10 | 답 | 144 | 75 | 정영석 | 충북 진천군 문백면 계산리 산1 | 568-14 |
| 13 | 566-21 | 답 | 147 | 147 | 송파구청 | | |
| 14 | 566-22 | 답 | 90 | 90 | 송파구청 | | |
| 15 | 568-12 | 답 | 45 | 45 | 송파구청 | | |
| 16 | 568-15 | 답 | 55 | 55 | 송파구청 | | |
| 17 | 576-3 | 답 | 313 | 313 | 송파구청 | | |
| 18 | 576-4 | 답 | 151 | 151 | 송파구청 | | |

| 연번 | 지 번 | 지목 | 면적(m ²) | 수용면적 (m ²) | 소 유 자 | | 비 고 |
|----|--------|----|---------------------|---------------------------|--|-----|------------------|
| | | | | | 성 명 | 주 소 | |
| 19 | 577-3 | 답 | 302 | 302 | 송과구청 | | |
| 20 | 577-4 | 답 | 168 | 168 | 송과구청 | | |
| 21 | 578-2 | 답 | 86 | 86 | 서울특별시 | | |
| 22 | 586-13 | 답 | 188 | 188 | 송과구청 | | |
| 23 | 586-13 | 답 | 360 | 360 | 서울특별시 | | |
| 24 | 586-16 | 답 | 16 | 16 | 서울특별시 | | |
| 25 | 586-18 | 답 | 275 | 275 | 서울특별시 | | |
| 26 | 587-3 | 답 | 156 | 156 | 송과구청 | | |
| 27 | 587-2 | 답 | 7 | 7 | 송과구청 | | |
| 28 | 600-4 | 답 | 1,164 | 564 | 신승록 강남구 청담동 13-12 | | 600-35 |
| 29 | 600-5 | 답 | 7 | 7 | 서울특별시 | | 600-5 |
| 30 | 600-27 | 답 | 427 | 29 | 심준순 동대문구 이문동 256-171(지분 30분의 1.5) 심광섭 경기 이천군 마장면 관리 1056-1(지분 30분의 4.5) 심광분 중구 신당동 840 현대A 6-804(지분 30분의 1.5) 심동섭 경기 고양시 관산동 4-5(지분 30분의 4.5) 심성섭 경기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291-1 대연A A-204(지분 30분의 4.5) 심광자 강남구 도곡동 921-4(지분 30분의 4.5) 심위섭 경기 이천군 마장면 관리 1056-1(지분 30분의 4.5) 심우섭 경남 창원시 도계동 114 블록 2노트 한마음 코아A 102-102(지분 30분의 4.5) (주)신중앙상호신용금고 중구 을지로3가 259-1(근저당설정 지상권 설정) | | 600-36 600-37 |

●종로구공고제1996-201호

신조공인공고

종로구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서류발급에 사용할 FAX 민원전용 구청장직인을 신조하였기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 제11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96. 9. 20

종로구청장

1. 사용개시일자 : 1996. 9. 11

2. 신조공인 인영

종로구 FAX 민원전용



종로구청장인
FAX 민원전용

●동대문구공고제1996-236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면허를 양도 인가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96. 9. 20

동대문구청장

1) 양도인가일 : 1996. 9. 6

2) 업종 및 면허번호 : 은실설치공사업, 제94-서울-23-7호

| 구 분 | 양 도 자 | 양 수 자 |
|-------|---------------------|---------------------|
| 상 호 | 안홍철강(주) | 만우건설(주) |
| 대 표 자 | 최 관 진 | 이 부 형 |
| 영업소재지 | 동대문구 신설동 109-13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718-41 |
| 도급한도액 | 은실(96-200,000,000원) | 은실(96-200,000,000원) |

●양천구공고제1996-125호

신정제6-2지구주택개량재개발

공사완료공고

1. 건설부고시 제807호(87. 12. 30)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58호(89. 6. 7)로 사업계획 결정되어 양천구고시 제12호(91. 4. 19)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된 신정제6-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에 대하여 사용승인하고 도시재개발법 제

48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1996. 9. 20

양천구청장

가. 사업명칭 : 신정제6-2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나. 시 행 자 : 양천구 신정동 89-26

신정제6-2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조합장 : 장세문)

다. 시행기간 : 91. 4. 19~96. 12. 31

라. 사업계획에 의한 공종별 공사내역

1) 건축시설

- 규모 : 아파트 22층 6동 9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7동
- 건축면적 : 5,231.98㎡
(건폐율 : 31.85%)
- 연면적 : 87,869.48㎡
(용적률 : 299.18%)

2) 토 지

- 대지면적 : 23,941.80㎡
- 공공시설(도로) : 1,196.0㎡

마. 사업비 재원별 내역(생략)

●금천구공고제1996-167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등록정지 처분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을 영업정지하였기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96. 9. 20

금 천 구 청 장

(행정처분 업소)

| 등록번호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행정처분사유 | 청문여부 | 행정처분내역 |
|------|------|-----|-------------|--------|------|-----------------------------------|
| 80 | 서흥설비 | 박서규 | 독산2동 1077-1 | 기술인력미달 | 불참 | 영업정지 3월 (96. 9. 11~96. 12. 10) |
| 38 | 미성설비 | 라석균 | 독산3동 888-14 | 기술인력미달 | 불참 | 영업정지 3월 (96. 9. 11~96. 12. 10) |

●관악구공고제1996-196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16호(96. 5. 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고시 제1996-38호(96. 8. 27)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시는 이 공고로 갈음하고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14일간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9. 20

관 악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관악구 신림1교 ~서울대앞 광장간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도림천 상류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규모
 [좌안 : 폭원 15~23m, 길이 2,590m
 우안 : 폭원 12~23m, 길이 2,590m
- 라. 사업자의 성명, 주소 : 관악구청장, 관악구 봉천동 1570-1
- 마. 사업의 착수,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002. 12. 31까지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
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함.

토 지 조 서

| 연번 | 소재지 지 번 | 지목 | 지적 (㎡) | 편입 면적 (㎡) | 실제 이용 상황 | 소 유 자 | |
|----|-------------|----|-----------|-----------------|----------------|--|-----|
| | | | | | | 성 명 | 주 소 |
| 1 | 신림동 808-407 | 하천 | 2,268 | 2,268 | 하천 | 국유지(건설부) | |
| 2 | 808-261 | 도 | 63 | 63 | 하천 | 관악구청 | |
| 3 | 808-393 | 하천 | 3,753 | 3,753 | 하천 | 국유지(건설부) | |
| 4 | 92-290 | 도 | 346 | 346 | 하천 | 관악구청 | |
| 5 | 94-308 | 대 | 18 | 18 | 하천 | 임용빈 충남 논산군 부적면 충곡리 198 | |
| 6 | 808-397 | 하천 | 556 | 556 | 하천 | 국유지(건설부) | |
| 7 | 94-316 | 전 | 18 | 18 | 하천 | 관악구청 | |
| 8 | 94-35 | 대 | 126 | 126 | 하천 | 서울특별시 | |
| 9 | 94-315 | 전 | 81 | 81 | 하천 | 관악구청 | |
| 10 | 94-314 | 도 | 221 | 18 | 도로 | 미등기, 토지대장(유) | |
| 11 | 109-7 | 도 | 18 | 18 | 하천 | 정우섭 영등포구 신도림1동 281-33 | |
| 12 | 96-1 | 도 | 905 | 905 | 하천 | 관악구청 | |
| 13 | 96-116 | 도 | 659 | 51 | 도로 | 서울특별시 | |
| 14 | 824-1 | 도 | 24 | 22 | 하천 | 국유지(건설부) | |
| 15 | 823-3 | 구 | 54 | 54 | 하천 | " | |
| 16 | 107-1 | 도 | 1,286 | 1,286 | 하천 | 관악구청 | |
| 17 | 107-8 | 도 | 67 | 67 | 하천 | 관악구청 | |
| 18 | 107-29 | 대 | 8 | 8 | 도로 | 관악구청 | |
| 19 | 107-18 | 도 | 1 | 1 | 하천 | 오광교 서대문구 충무로3가 30-11 (홍영숙 중구 충무로3가 30-12) | |
| 20 | 808-401 | 천 | 3,549 | 3,549 | " | 국유지(건설부) | |
| 21 | 808-135 | 하천 | 317 | 317 | 하천 | 국유지(건설부) | |

| 연번 | 소재지 지 번 | 지목 | 지적 (㎡) | 편입 면적 (㎡) | 실제 이용 상황 | 소 유 자 | |
|----|------------|----|-----------|-----------------|----------------|--------------------|-----|
| | | | | | | 성 명 | 주 소 |
| 22 | 808-412 | " | 192 | 192 | 하천 | 국유지(건설부) | |
| 23 | 112-14 | 대 | 496 | 496 | " | 서울특별시 | |
| 24 | 808-410 | 하천 | 49 | 49 | 도로 | 국유지(건설부) | |
| 25 | 112-17 | 도 | 93 | 93 | 하천 | 유기열 관악구 신림동 409-45 | |
| 26 | 118-30 | 도 | 190 | 111 | 하천 | 관악구청 | |
| 27 | 118-11 | 도 | 332 | 332 | 하천 | 관악구청 | |
| 28 | 116-5 | 대 | 2,975 | 2,975 | " | 서울특별시 | |
| 29 | 808-404 | 하천 | 601 | 601 | 도로 | 국유지(건설부) | |
| 30 | 116-35 | 대 | 325 | 325 | 도로 (하천) | 미등기, 토지대장(유) | |
| 31 | 116-4 | 도 | 62 | 62 | 하천 | 정상진 용산구 용문동 32-10 | |
| 32 | 117-10 | 대 | 10 | 10 | 하천 | 관악구청 | |
| 33 | 808-406 | 하천 | 1,844 | 1,844 | 하천 | 국유지(건설부) | |
| 34 | 808-134 | 하천 | 9,099 | 9,099 | 도로 | 국유지(건설부) | |
| 35 | 815-8 | 도 | 105 | 105 | 하천 | 국유지(건설부) | |
| 36 | 808-386 | 하천 | 249 | 249 | 하천 | 국유지(건설부) | |
| 37 | 815-2 | 도 | 140 | 140 | 하천 | 국유지(건설부) | |
| 38 | 131-7 | 도 | 910 | 910 | 하천 | 관악구청 | |
| 39 | 815-1 | 도 | 249 | 249 | 도로 | 국유지(건설부) | |
| 40 | 132 | 도 | 397 | 397 | 하천 | 관악구청 | |
| 41 | 808-387 | 하천 | 1,194 | 1,194 | 하천 | 국유지(건설부) | |
| 42 | 808-132 | 하천 | 11,670 | 5,022 | 도로 | 국유지(건설부) | |
| 43 | 808-133 | 하천 | 12,655 | 2,819 | 도로 | 국유지(건설부) | |
| 44 | 406-5 | 하천 | 2,880 | 2,880 | 도로 | 서울특별시 | |
| 45 | 112-6 | 대 | 678 | 678 | 도로 | 서울특별시 | |
| 46 | 808-1 | 하천 | 4,403 | 2,880 | 도로 | 국유지(건설부) | |

| 연번 | 소재지 지 번 | 지목 | 지적 (㎡) | 편입 면적 (㎡) | 실제 이용 상황 | 소 유 자 | |
|----|------------|----|-----------|-----------------|----------------|---------------------|-----|
| | | | | | | 성 명 | 주 소 |
| 47 | 808-408 | 하천 | 1,625 | 938 | 하천 | 국유지(건설부) | |
| 48 | 409-1 | 도 | 785 | 400 | 하천 | 관악구청 | |
| 49 | 808-395 | 하천 | 24 | 24 | 하천 | 국유지(건설부) | |
| 50 | 808-396 | 하천 | 74 | 62 | 하천 | 국유지(건설부) | |
| 51 | 409-235 | 대 | 264 | 18 | 하천 | 양종래 관악구 신림동 409-235 | |
| 52 | 409-24 | 대 | 159 | 26 | 하천 | 백충현 관악구 신림동 409-24 | |
| 53 | 409-215 | 도 | 20 | 20 | 하천 | 서울특별시 | |
| 54 | 408-6 | 도 | 1,785 | 1,785 | 하천 | 관악구청 | |
| 55 | 839-3 | 도 | 22 | 22 | 하천 | 국유지(건설부) | |
| 56 | 839-1 | 도 | 80 | 80 | 하천 | 국유지(건설부) | |
| 57 | 408-1 | 담 | 936 | 936 | 하천 | 관악구청 | |
| 58 | 408-150 | 도 | 93 | 93 | 하천 | 관악구청 | |
| 59 | 808-398 | 하천 | 1,319 | 1,319 | 하천 | 국유지(건설부) | |
| 60 | 408-159 | 도 | 9 | 9 | 하천 | 서울특별시 | |
| 61 | 839-5 | 도 | 37 | 35 | 하천 | 국유지(건설부) | |
| 62 | 407-1 | 도 | 107 | 107 | 하천 | 관악구청 | |
| 63 | 407-23 | 도 | 15 | 15 | 도로 | 이정옥 성북구 보문동4가 86 | |
| 64 | 407-24 | 도 | 30 | 30 | 도로 | 관악구청 | |
| 65 | 407-22 | 도 | 53 | 53 | 하천 | 관악구청 | |
| 66 | 808-400 | 하천 | 80 | 80 | 하천 | 국유지(건설부) | |
| 67 | 407-25 | 도 | 30 | 30 | 도로 | 관악구청 | |
| 68 | 407-18 | 도 | 14 | 14 | 도로 (하천) | 관악구청 | |
| 69 | 406-73 | 도 | 28 | 26 | 도로 | 관악구청 | |
| 70 | 407-5 | 대 | 674 | 674 | 하천 | 관악구청 | |
| 71 | 407-26 | 도 | 275 | 165 | 도로 | 관악구청 | |

| 연번 | 소재지 지 번 | 지목 | 지적 (㎡) | 편입 면적 (㎡) | 실제 이용 상황 | 소 유 자 | |
|----|------------|----|-----------|-----------------|----------------|--------------------|-----|
| | | | | | | 성 명 | 주 소 |
| 72 | 406-88 | 대 | 8 | 8 | 도로 | 고정진 강남구 원지동 510 | |
| 73 | 406-89 | 도 | 20 | 20 | 도로 | 서울특별시 | |
| 74 | 406-35 | 대 | 22 | 22 | 하천 | 고정진 강남구 원지동 510 | |
| 75 | 406-14 | 잡 | 10 | 10 | 하천 | 현광섭 관악구 신림동 406-67 | |
| 76 | 406-58 | 도 | 733 | 733 | 하천 | 서울특별시 | |
| 77 | 406-84 | 도 | 73 | 73 | 하천 | 관악구청 | |
| 78 | 406-85 | 도 | 344 | 344 | 하천 | 서울특별시 | |
| 79 | 321-11 | 잡 | 73 | 57 | 도로 | 미등기, 토지대장(유) | |
| 80 | 827-13 | 대 | 105 | 105 | 하천 | 국유지(건설부) | |
| 81 | 404-8 | 하천 | 277 | 151 | 도로 | 서울특별시 | |
| 82 | 404-4 | 도 | 180 | 180 | 하천 | 관악구청 | |
| 83 | 403-37 | 도 | 119 | 119 | 하천 | 서울특별시 | |
| 84 | 395-78 | 도 | 69 | 69 | 하천 | 관악구청 | |
| 85 | 395-84 | 도 | 111 | 111 | 하천 | 관악구청 | |
| 86 | 808-419 | 하천 | 244 | 244 | 하천 (도로) | 국유지(건설부) | |
| 87 | 808-416 | 하천 | 404 | 404 | 하천 | 국유지(건설부) | |
| 88 | 289-3 | 도 | 2,688 | 2,688 | 하천 | 관악구청 | |
| 89 | 289-5 | 도 | 219 | 219 | 도로 | 서울특별시 | |
| 90 | 288-6 | 도 | 398 | 398 | 도로 | 서울특별시 | |
| 91 | 286-24 | 잡 | 418 | 418 | 도로 | 서울특별시 | |
| 92 | 285-5 | 도 | 182 | 182 | 하천 | 서울특별시 | |
| 93 | 821-1 | 구 | 136 | 136 | 하천 | 국유지(건설부) | |
| 94 | 272-7 | 구 | 3 | 3 | 하천 | 미등기, 토지대장(유) | |
| 95 | 821-4 | 구 | 38 | 38 | 도로 | 국유지(건설부) | |
| 96 | 271 | 도 | 567 | 567 | | | |

| 연번 | 소재지 지 번 | 지목 | 지적 (㎡) | 편입 면적 (㎡) | 실제 이용 상황 | 소 유 자 | |
|-----|------------|----|-----------|-----------------|----------------|---|-----|
| | | | | | | 성 명 | 주 소 |
| 97 | 270-2 | 도 | 3 | 3 | 하천 | 관악구청 | |
| 98 | 808-405 | 하천 | 278 | 278 | 도로 | 국유지(건설부) | |
| 99 | 270 | 잡 | 255 | 255 | 하천 | 관악구청 | |
| 99 | 270 | 잡 | 255 | 255 | 도로 | 국유지(건설부) | |
| 100 | 266 | 도 | 199 | 199 | 하천 | 관악구청 | |
| 101 | 818-15 | 구 | 132 | 132 | 하천 | 국유지(건설부) | |
| 102 | 818-49 | 구 | 80 | 80 | 도로 | 국유지(건설부) | |
| 103 | 270-3 | 도 | 148 | 148 | 도로 | 관악구청 | |
| 104 | 239-4 | 도 | 1,001 | 1,001 | 도로 | 관악구청 | |
| 105 | 339-1 | 답 | 7,481 | 7,481 | 하천 | 김임숙 관악구 신림동 352-4 (운명옹 신림동 352-4) (운복섭 동작구 노량진동 302-50) (운향섭 신림동 1559-16) (운영옹 강서구 화곡동 1091 주공시범 A 5-210) (운정섭 서초구 방배동 530-102) (윤경자 광명시 철산동 467-180 장미A 2-404) | |
| 106 | 241-9 | 대 | 430 | 430 | 하천 | 관악구청 | |
| 107 | 241-119 | 도 | 152 | 152 | 도로 | 관악구청 | |
| 108 | 241-121 | 도 | 57 | 57 | 하천 | 미등기, 토지대장(유) | |
| 109 | 241-122 | 도 | 132 | 132 | 도로 | 관악구청 | |
| 110 | 241-1 | 도 | 545 | 545 | 하천 | 관악구청 | |
| 111 | 238-4 | 답 | 251 | 251 | 하천 | 서울특별시 | |
| 112 | 808-130 | 하천 | 476 | 476 | 하천 | 국유지(건설부) | |
| 113 | 238-1 | 답 | 60 | 60 | 하천 | 서울특별시 | |
| 114 | 228-1 | 답 | 30 | 30 | 하천 | 서울특별시 | |
| 115 | 813-3 | 도 | 319 | 319 | 하천 | 국유지(건설부) | |

| 연번 | 소재지 지번 | 지목 | 지적 (㎡) | 편입 면적 (㎡) | 실제 이용 상황 | 소유자 | |
|-----|-----------|----|-----------|-----------------|----------------|--------------|----|
| | | | | | | 성명 | 주소 |
| 116 | 813-1 | 도 | 331 | 292 | 도로 | 국유지(건설부) | |
| 117 | 226-2 | 전 | 772 | 772 | 하천 | 미등기, 토지대장(유) | |
| 118 | 226 | 천 | 1,630 | 701 | 도로 | 서울특별시 | |
| 119 | 813-522 | 도 | 128 | 111 | 하천 (도로) | 국유지(건설부) | |

●강남구공고제1996-258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

기에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6. 9. 20
강남구청장

| 연번 | 인가 일자 | 양도업종 및 면허번호 | 양도자 | | | 양수자 | | |
|----|--------------|------------------------|-------------|------------------|-----|-------------|-----------------|-----|
| | | |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
| 1 | 1996 9. 9 | 미장방수공사업 92-서울-03-58 | 지석건 업(주) | 강남구 논현동 123-5 | 조남호 | 지주건 설(주) | 송파구 가락동 18-7 | 고길선 |

●송파구공고제1996-200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
업면허를 양도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1996. 9. 20

송파구청장

●양도인가연월일 : 1996. 9. 10.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및 면허번호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번호 : 92-서울-
13-103), 포장공사업(면허번호 : 92-서울-
16-29)

●양도자, 양수자의 주된 영업장 소재지, 상
호 및 성명

○양도자

• 상호 : 경보건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00-3

• 대표자 : 이순익

○양수자

• 상호 : (주)경보공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00-3

• 대표자 : 이순익

●송파구공고제1996-201호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
설)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48호(96. 6. 3)
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되
고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1996-17호
(96. 7. 31)호로 지적 승인, 고시된 송파

구 장지동 233-5 외 26필지상 도시계획 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25조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관련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토지,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람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송파구 청소과와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공고하고 있으니,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시는 의견서를 공람공고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 9. 20
송 파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 사업시행지 | 사업의종류 및 규모 | 면 적 | 기 간 | 도시계획사업폐기물처리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
|----------------------|-----------------------|----------------------|-------------------|--|
| 송파구 장지동 233-5 외 26필지 | 폐기물처리시설 (중간처리시설) 설치사업 | 57,245m ² | 인가일~2001년 12월 31일 | 서울시고시 제1996-148호(96. 6. 3) 송파구고시 제1996-17호(96. 7. 31) |

- 나. 사업시행자 : 송파구청장
-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조사 : 생략
- 라. 위치도, 계획평면도, 지적도 : 생략
- 마.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바. 공람장소 : 송파구청 청소과(410-3375) 및 도시계획과(410-3385)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1996-9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6. 9. 20
한강관리사업소장

사업소고시

| 허 가 연월일 | 위 치 | 지목 | 점용면적 (m ²) | 점용목적 | 점용기간 | 허가를 받은 자 | |
|---------|----------------------------|----|------------------------|------------------|------------------|----------------------------|-----|
| | | | | | | 주 소 | 성 명 |
| 96. 9.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서초구 잠원동 번지선 한강 | 하천 | 22.5m ² | 서울 지하철 11호선 지질조사 | 허가 일로 부터 ~ 30 일간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주)대우엔지니어링 | 정도영 |

교육청공고

●북부교육청공고

제 1996-20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서울쌍문초등학교 화장실 개량공사

-공사규모: 화장실개량 4동

-예 산 액: 263,038,000원

나. 서울계상초등학교 화장실 개량 및 기타공사

-공사규모: 화장실개량 4동, 현관 채

양보수 2개소, 외벽균열 1식

-예 산 액: 229,538,000원

다. 상계여자중학교 교사보수공사

-공사규모: 강당 4실 내부개수, 내부 도장 92실

-예 산 액: 135,289,000원

2. 입찰일시 및 장소: 1996. 10. 10. 15:00

우리 교육청 대강당(4층)

3. 현장성명 일시 및 장소: 1996. 9. 30

11:00 유리 교육청 시설과(4층)

4. 현장설명 참가자격: 건축기사 2급이상

5. 입찰등록 마감 및 장소: 1996. 10. 9.

18:00 우리 교육청 재무과(1층)

6. 입찰참가 자격

가.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주된 영업지(본사)가 서울시내에 소재한 업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및 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참가 신청서류: 시설공사 입찰 유의서에 의한 소정 서류

10. 입찰참가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우편 및 상시투찰이 가능합니다. 상시투찰 및 우편투찰은 입찰시각 전까지 접수되어야 유효하며 우편 및 상시투찰시는 2차 이후 입찰시에도 유효합니다. 우편입찰시에는 절봉투에 공고번호, 공사명을 반드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자는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일반조건 및 특수계약조건, 공사현장 설명사항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교육청 시설과(996-7981)나 재무과(997-65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본 공사의 입찰결과는 광고사서함 152-3185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본 시설공사의 복수예비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쌍문초등학교 화장실개량공사

① 261,197,540 ② 260,674,360

③ 260,151,270 ④ 259,628,810

⑤ 259,105,960 ⑥ 258,582,990

⑦ 258,060,080 ⑧ 257,537,710

⑨ 257,014,620 ⑩ 256,491,270

-서울계상초등학교 화장실 개량 및 기타공사

① 227,931,840 ② 227,475,520

③ 227,019,200 ④ 226,562,880

⑤ 226,106,650 ⑥ 225,650,420

⑦ 225,193,290 ⑧ 224,737,690

⑨ 224,281,820 ⑩ 223,824,960

-상계여자중학교 교사 보수공사

① 134,342,520 ② 134,073,570

③ 133,804,260 ④ 133,535,760

- ⑤ 133,266,270 ⑥ 132,997,970
- ⑦ 132,728,280 ⑧ 132,459,780
- ⑨ 132,190,290 ⑩ 131,921,930

1996. 9. 20.

북부교육청경리관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 1996-3호

재산등록및변동사항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재
산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
니다.

1996. 9. 20

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 ①소 속 | 서울특별시교육청 | | ②직 위 | 부교육감 | ③성 명 | 이 원 우 |
|--------------|-----------------------|---|------|----------------------------------|---------------|-------|
| ④본인과의 관 계 | ⑤재산의 종 류 | ⑥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 | | ⑦가 액 (천원) | ⑧비 고 | |
| 본 인 | 건 물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140-44 196.98/603㎡ 1층 주택 | | 324,857 | 지층, 부속사포 함 | |
| | 자 동 차 예 금 | 95년식 소나타II(13,344) 국민투자신탁(미래공사채) 서울은행(저축예금) 대한교원공제회(장기급여) | | 193,979 11,367 4,535 | | |
| (소 계) | | | | 534,738 | | |
| 배우자 | 예 금 | 서울은행(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삼성생명(노후설계연금) 조흥은행(자유저축예금) 대한교원공제회(장기급여) | | 23,848 10,200 260 2,755 | | |
| (소 계) | | | | 37,063 | | |
| 총 계 | | | | 571,801 | | |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 ①소 속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 | ②직 위 | 교육위원 | ③성 명 | 김 두 선 |
|--------------|-------------|--------------------------------|------|--------------|-------|-------|
| ④본인과의 관 계 | ⑤재산의 종 류 | ⑥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 | | ⑦가 액 (천원) | ⑧변동사유 | |
| 본 인 | 토 지 |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283 전 1,858㎡ | | 3,196 | 추가신고분 | |
| (소 계) | | | | 3,196 | | |
| 총 계 | | | | 3,196 | | |

공 문 시 행

서울특별시
 문서번호 보도 84200-204
 시행일자 1996. 9. 20
 수 신 서울시 산하기관
 제 목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1. 보도담당관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음

물품을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전환 소요여부를 조회하오니 희망기관(부서)에서는 96. 9. 30까지 관리전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전환요청 : 보도담당관실 (731-6115, 6516. 담당 : 임태홍)

2. 위 기간내 요청이 없을 시는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소요조회 대상 물품

| 정부물품 분류번호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취득일 | 취득금액 (천원) | 상 태 | 비 고 |
|--------------|-------|---------|-----|-----|---------|--------------|-----|-----|
| 5815-347 | 모사전송기 | CF-400 | 대 | 1 | 89. 11. | 1,980 | 중 고 | |
| | | CF-4100 | 대 | 1 | 90. 7. | 2,057 | 중 고 | |

가양하수처리사업소
 문서번호 수처 13330-351
 시행일자 1996. 9. 20
 수 신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제 목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1.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음 물
 품에 대하여 서울시물품관리조례 제16조

의 규정에 의거 관리전환 소요조회하니 희망부서에서는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관리전환 요청하기 바라며,
 2. 위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하겠습니다.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가. 관리전환 대상물품

| 정부물품 분류번호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취득일자 | 물품상태 |
|--------------|-----------------|---|-----|-----|--------|------|
| 432-026 | 횡축무폐쇄형 블류트펌프 | • Q = 3 m ³ /min • H = 25m • D = 150 * 150 | 대 | 5 | 87. 6. | 요정비 |

인 사 발 령

기능직 공무원 휴직

발령 제534호(1996. 9. 9)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사무보조원10등급
 (타자) 황효순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서울특별시장

기능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535호(1996. 9. 9)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방건축원10등급
 이정엽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한강관리사업소 지방운전원10등급 오병
 일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장

기능직공무원 전직

발령 제536호(1996. 9. 9)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조무원8등급(검
 침) 홍기수 지방방호원8등급(경비)에 임함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조무원10등급(검
 침) 박현규 지방방호원10등급(경비)에 임함
 서울특별시장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 취소

발령 제537호(1996. 9. 9)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전기원10등급시보
 이중훈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9월 5일자 신규임용
 (발령호수512호)을 취소함
 서울특별시장

기술직공무원 신규임용 취소

발령 제538호(1996. 9. 9)
 전자계산소 지방통신기술서기보시보 이승
 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
 에 의하여 1996년 9월 5일자 신규임용(발
 령호수510호)을 취소함
 서울특별시장

기능직공무원 전보 및 파견

발령 제539호(1996. 9. 10)
 총무과 지방운전원10등급 이상호 폐기물
 관리과 수도권매립지 파견근무를 명함(파견
 기간 : 96.9.10~97.9.9)
 서울특별시장

기능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540호(1996. 9. 10)
 폐기물관리과 지방운전원9등급 박상철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장

행정5급 공무원 전보 및 진출·입

발령 제541호(1996. 9. 13)
 구로구 지방행정사무관 김종로 서울특별
 시 전입 세무운영과과장1계장
 가정복지과보육계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봉
 환 가정복지과 노인행정계장
 송파구 지방행정사무관 박필숙 서울특별
 시 전입 가정복지과보육계장
 영등포구 지방행정사무관 김경탁 서울특
 별시 전입 교통운영과녹색교통계장
 도봉구 지방행정사무관 이성환 서울특별
 시 전입 동부근로청소년회관장
 동부근로청소년회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
 종희 문화시설운영사업소박물관운영관
 내무국 지방행정사무관 서정협 국제교류
 과동북아계장
 국제교류과동북아계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상진 내무국
 세무운영과과장1계장 지방행정사무관 정
 태영 내무국
 서울특별시장

기술직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 취소

발령 제542호(1996. 9. 12)
 난지하수처리사업소 지방기계서기보 김용
 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
 에 의하여 1996년 9월 5일자 신규임용(발
 령호수510호)을 취소함
 난지하수처리사업소 지방기계원10등급
 이호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9월 5일자 신규임용
 (발령호수512호)을 취소함

서울특별시

기능직공무원 전직

발령 제543호(1996. 9. 16)

세종문화회관 지방조무원10등급(검수표) 배소영 지방사무보조원10등급(타자)에 임함 총무과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위생원10등급(지역) 송혜정 지방사무보조원10등급(타자)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방호원10등급(방호) 오홍탁 지방통신원10등급에 임함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위생원10등급(지역) 한두표 지방방호원10등급(경비)에 임함

서울특별시

연구직 공무원 정규임용

발령 제544호(1996. 9. 15)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보건연구사시보 홍인석 지방보건연구사에 임함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보건연구사시보 홍채규 지방보건연구사에 임함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보건연구사시보 김수진 지방보건연구사에 임함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보건연구사시보 이영기 지방보건연구사에 임함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보건연구사시보 이재인 지방보건연구사에 임함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보건연구사시보 박경애 지방보건연구사에 임함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보건연구사시보 남정현 지방보건연구사에 임함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보건연구사시보 유영아 지방보건연구사에 임함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보건연구사시보 정보경 지방보건연구사에 임함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보건연구사시보 전수

진 지방보건연구사에 임함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보건연구사시보 조성자 지방보건연구사에 임함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보건연구사시보 정소영 지방보건연구사에 임함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보건연구사시보 장민수 지방보건연구사에 임함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환경연구사시보 류인철 지방환경연구사에 임함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환경연구사시보 안미진 지방환경연구사에 임함

서울특별시

행정3급 파견 및 승진임용

발령 제545호(1996. 9. 15)

내무국 지방부이사관 최령 국외훈련파견(96.9.15~97.9.14)

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직무대리 지방서기관 김근배 지방부이사관

서울특별시

연구직공무원 신규임용 취소

발령 제546호(1996. 9. 13)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보건연구사시보 최명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9월 5일자 신규임용(발령호수509호)을 동일자로 취소함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보건연구사시보 김혜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9월 5일자 신규임용(발령호수509호)을 동일자로 취소함

서울특별시

기능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547호(1996. 9. 13)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조무원9등급(검침) 정동식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 | |
|--|---|
| <p>기능직공무원 복직 발령 제548호(1996. 9. 14)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 지방기계원 10등급 김성철 복직을 명함 서울특별시</p> <p>7급 기술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549호(1996. 9. 13) 시립동부병원 지방의료기술(병리)주사보 정연금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p> <p>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전보 및 전출·입 발령 제550호(1996. 9. 14)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토목주사 이진용 폐 기물시설과 폐기물시설과 지방토목주사 김수인 동대 문구전출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토목주사보 백은식</p> | <p>조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지방토목주사보 이홍원 송과 구전출 서울특별시(탄천하수처리(사)) 지방보전 서기 김미숙 제주시전출 제주시 지방보전서기 현순혜 서울특별시 전입 탄천하수처리사업소 서울특별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p>기 타</p> </div> <p>정정게재 1. 서울시보 제1988호(96. 8. 10일자)에 게재 된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 제3320 호로 공포된 건축조례 내용 중 오류사항 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1996. 9. 20 서울특별시</p> |
|--|---|

가. 정정게재 내용.

| 조 례 명 | 오 | 정 | 비 고 |
|-------------------|------------------------------|---------------------------------|----------------------|
| 서울특별시건축 조례개정조례 | 제4조제1항 내용중 영 제6조의2 “제2항”을 | 제4조제1항 내용중 영 제6조의2 “제1항제2호”로 | 시보 제1988호 183-17쪽 |
| | 제4조제4항 내용중 영 제6조의2 “제1항”을 | 제4조제4항 내용중 영 제6조의2 “제2항”으로 | 시보 제1988호 183-18쪽 |

2. 서울시보 제1994호(1996. 9. 10일자)에
게재된 마포구공고 제1996-215호 마포로
2구역제9지구재개발사업공사완료공고 내
용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1996. 9. 20
마 포 구 청 장

가. 정정게재 내용

| 구 분 | 오 | 정 |
|--------------------------------|-----------|------------|
| 시보 제1994호 54-25쪽 하단에서 13번째줄 | “지상 10층”을 | “지상 18층”으로 |